

2023

민주화운동기념관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연구개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민주화운동기념관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연구개발

연구책임자 정원규 (서울대학교)

공동연구원 송현정 (서울대학교)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연구보조원 선보라 (서울대학교)

보고회 및 전문가 협의회 참석자

[전문가 협의회]

강대현 (전북대학교)	강병희 (경기북과학교등학교)
김현경 (운산고등학교)	남연우 (한국자유총연맹:부산)
손우정 (성공회대학교)	오덕열 (연세대학교)
옥일남 (서원대학교)	윤노아 (이화여자대학교)
이원경 (한국자유총연맹:중앙)	이충식 (환경교육센터)
이 호 (더 이음)	장은주 (영산대학교)
정하윤 (시민교육콘텐츠 연구소)	정현이 (대전 느리울초등학교)
천희완 (민주시민교육 연구소)	

[중간 보고회]

김육훈 (서울 공업고등학교)	서미화 (공익활동연구소)
-----------------	---------------

[최종 보고회]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장은주 (영산대학교)
----------------	-------------

목차 CONTENTS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 방법	5
II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	7
	1. 민주시민교육 의미 규정의 일반적 어려움	9
	2.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구체화 요건	11
	3.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규정적 의미와 내용 요소	14
	4.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 의미 규정의 학술적 정합성 검토	19
	5.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 목적의 재구성과 범위 규정	22
III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구성 방안	27
	1.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의 특징	29
	2.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 요소	31
	3.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유의점	36
	4. 국내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의 보완점과 시사점	39
IV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활용 사례	47
	1.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구체화 방안 예시	49
	2.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활용 사례	52
V	결론	67
	참고문헌	71

표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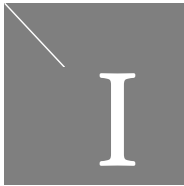
〈표 1〉 민주주의 기본 원리, 민주화 운동 준거 사건, 적용 영역 연결 형식	17
〈표 2〉 민주화 운동 준거 사건에 따른 기본 원리, 적용 영역 총괄	17
〈표 3〉 기념, 계승, 민주 발전의 포괄적 의미	31
〈표 4〉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내용 요소	32
〈표 5〉 교육 목적과 교육 요소를 통해 구체화 된 교육 목표	50

I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024년 개관을 준비 중인 민주화운동기념관은 억압의 상징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개조하여 민주화 운동 정신을 기념, 기억, 교육함과 동시에 이러한 성과를 다른 이들과도 나누는 연대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은 일제 강점기와 남북분단, 한국전쟁, 가난이라는 열악한 여건과 국민을 피지배자로만 생각하는 그릇된 위정자, 권력 집단 등의 억압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일궈낸 우리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불굴의 의지와 위업을 보여주는 상징적 기관이다. 향후 민주화운동기념관은 과거의 위업을 잊지 않게 하는 기념의 역할을 바탕으로, 민주화 정신의 의미를 현재에 되새기고, 나아가 그것을 미래의 초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민주시민학교는 민주화운동기념관에 부여된 다양한 역할 중에서 특히 교육적 기능을 담당한다. 민주시민학교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과 정보, 실천 역량 등을 상시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현재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대의 노력과 분투의 산물임을 확인하고, 그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를 더욱 개선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 민주시민학교는 이러한 우리의 경험을 미래로 확장하고 세계인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후대와 세계인까지 포용하는 민주적 연대의 다른 표현이며, 우리 민주주의가 과거와 지역에 박제되는 것을 막는 민주적 역동성의 확장적 실천이다.

민주시민학교는 국가적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지속과 발전에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기획, 운영될 필요가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을 정비하여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연구진이 수행한 이 프로젝트는 그러한 정비 과정의 일환으로서, 그간 사업회에 의해 운영되던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이고 시민친화적인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회의 시도는 국내외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거의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현 상황과,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면 매우 시의적

절하지만, 2001년이라는 사업회 발족 시기를 고려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그동안 부분적으로 연구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 더 근원적으로 민주주의는 규격화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조건과 상호작용하며 발전해 나가는 것이므로 민주시민교육은 본래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사업회에서 이러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주된 이유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사업회의 성격과 활동이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업회 민주시민교육, 곧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구성의 가장 큰 과제는 정권의 성격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도 국민 모두에게 필수적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처럼 정파에 따른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권 중립적인, 그러면서도 필수적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형식 정립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먼저 떠오르게 된다. 이러한 의구심은 민주시민교육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사업회 민주시민교육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배경 조건을 갖고 있다.

가령 학교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에는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모든 교육 내용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우선 우리에게도 익숙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민주시민교육 지침은 정파적 대립의 영향으로 인해 현재 교육의 비편향성으로 오독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중립성이 이처럼 비편향성으로 해석되면 자신의 입장과 다른 견해는 모두 편향적이라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모든 사람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 모든 교육 내용이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배척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만 비추어 보아도 중립성은 비편향성이 아니다. 하지만 비편향성으로 해석된 중립성의 이름으로 많은 교육 내용이 배제되어 교육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다.

이에 비해 사업회 민주시민교육에서는 교육 내용 전부는 아니더라도 교육 목적, 준거 사건 등이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에서는 중립성, 또는 편향성 논란과 별개로 교육 목적과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회 민주시민교육은 또 실행의 측면에서도 교육적 중립성 요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맥락에서는 교육 참여자, 즉 학생이 교육 내용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교나 교사가 정해진 내용을 공부하게 되므로, 역으로 교육 내용에 대한 검토와 제약이 더 많이 요구된다. 하지만 사업회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은 대부분의 경우에 교육 참여자가 교육 내용과 교육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참여자에게 교육 내용이 미리 알려지지만 한다면, 적어도 교육 참여자에 의해서는 교육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업회 민주시민교육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아울러 법적 규정도 해석에 따라 내용이 적지 않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와 관련한 추가적 해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진은 우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및 시행령, 그리고 민주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수용되는 보편적 내용,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배경으로서 우리 헌법을 반영하여 논란을 최대한 축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구성, 제안할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두 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지는데, 먼저 II장에서는 법령 및 일반적인 학술적 내용에 근거하여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추출하고, III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의 특징과 내용 요소, 그리고 운영상의 유의점 등을 구성, 제안한다. IV장은 이러한 교육과정이 구체적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교육 프로그램의 형태로 예시할 것이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를 위해 사용된 주된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전문가 협의회이다. 문헌 연구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기존의 연구 자료를 참고했지만, 이 연구는 민주시민학교, 즉 특정한 기구의 교육과정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문헌 연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을 추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에 기존의 연구 자료는 일반적으로 학술적 목적을 위해 작성된 것이거나 다른 기구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내용이 이 연구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연구진의 제안이 기존의 연구 성과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적어도 학술적으로 통용되는 연구 성과에 배치(背馳)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순수 문헌 연구 부분은 연구진의 제안이 기존 연구 성과와 정합적일 수 있는지 여부에 한정된 것이다.

그런데 연구진이 제안한 교육과정이 기존 연구 성과와 정합적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교육과정의 적절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기존 연구 성과와의 정합성은 연구의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지만 충분 조건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진은 2차에 걸쳐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다. 첫 번째 자문은 2023년 10월 19일에서 11월 5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전문 연구자, 활동가, 교사 등으로 이루어진 총 8인이 참여하였다. 이때는 질의를 특정하지 않고 각자의 관심에 따라 비평해 줄 것을 요청했다. 2차 자문은 7인의 자문인을 새로 선정하여 11월 13에서 20일에 걸치는 기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기존의 비평 내용을 토대로 자문 내용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차 자문에서 확인한 바로는 관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해서 자문을 협의회 형태로 진행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차 자문시에는 자문 요청 사항을 특정하고, 자문 참여자의 성격도 실제 프로그램 진행자로 한정해서 협의회를 진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고자 했다.¹⁾

1) 1차, 2차 자문에는 각각 8명, 7명의 전문가가 참가하였다. 보고서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난해한 자문

1차와 2차 전문가 협의회는 둘 다 이메일을 통한 서면 의견 제출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1차 자문의 경우 전문가들의 관심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해서 대면 협의회로 진행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연구진에서 이를 취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차 자문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예시와 관련하여 전문적 의견을 주실 수 있는 자문위원을 섭외하여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특정하여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서면 응답이 연구 결과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문과 관련하여 일부 자문인의 요청으로 자문인의 인적 사항을 특기함이 없이 자문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연구진이 확인한 바로는 자문인의 요청을 반영하는 것이 더 자유로운 비평을 가능하게 하며,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자문인을 반드시 특정해야 하는 비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자문인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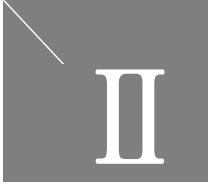
에 성실히 임해 주심에 무엇보다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한 자문인이 명기하기를 요청한 바와 같이 모든 자문은 개인 자격으로 이루어졌으며 소속 단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둔다.

II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

1. 민주시민교육 의미 규정의 일반적 어려움
2.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구체화
요건
3.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규정적
의미와 내용 요소
4.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 의미
규정의 학술적 정합성 검토
5.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 목적의
재구성과 범위 규정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

1 민주시민교육 의미 규정의 일반적 어려움

어떤 식으로든 자기 나라에 애착(attachment)을 갖는 국민을 양성하지 못하는 국가나 정부는 지속되기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 의미의 국민을 양성하는 교육은 모든 국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관심 사항이다. 그런데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시민교육’으로 명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문언적으로는 유사한 의미의 ‘국민교육’이라는 용어가 있지만, 국민교육은 국가나 정부에 순종적인 신민(臣民)을 길러내는 교육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시민교육’은 주로 주권자 교육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민주주의 교육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자연스럽게 ‘국민교육’보다는 ‘시민교육’을 선호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용어가 정리되는 흐름과는 반대로 시민교육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국민교육에서는 교육의 내용보다도 특정한 교육 내용에 대한 찬반이 문제가 되지만, 시민교육에서는 교육 내용 자체에 대해 더욱 다양한 견해차가 발생하곤 하기 때문이다.

시민교육을 둘러싼 이러한 논란은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발 더 나아가 시민교육의 명칭에서부터 다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이후 ‘국민교육’, ‘국민윤리’ 등의 용어가 사라지고 시민교육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서로 경합하고 있다. 하지만 순전히 문언적, 학술적으로만 본다면 두 용어의 의미는 동일하다. 전술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시민’은 주권 참여자를 의미했고,²⁾ 이러한 의미는 당연히 ‘민주시민’에도 포함되어 있다. 요컨대 ‘시민’과 ‘민주시민’, ‘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의미상으로 사실상 동의어인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연구진은 이 보고서에서 대표 용어로 ‘민주시민교육’을 사용하지만, 문맥에 따라 ‘시민교육’을 병용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연구진의 개인적인 선호를 반영한 것이지만 이 보고서의 발주처가 ‘민주’를 강조하는 공공기관임을 고려한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의 명칭과 관련된 논란은 정파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 외에 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

2) Rousseau, 2014: 174.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른 논란들은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관련된 실질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뿐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체제를 배경으로 하고, 민주주의 체제는 원칙적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실천 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민 활동을 허용하는 다원주의(pluralism)를 전제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사람들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견해가 더욱 다양하게 발현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최대한 장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사회적 이상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시민교육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전제로서 다원주의, 즉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야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모든 논란이 반드시 이처럼 불가피하거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전술한 것처럼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실천 활동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며, 그 외에도 민주주의 체제의 전제인 다원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논란들은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부정적 논란의 여파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편향성으로 해석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그러한 논란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서 언급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원래 국가, 또는 정부의 교육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전술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중립성’을 교육 내용의 비편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헌법의 취지나 교육적 중립성에 대한 일반적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다. 더욱이 교육적 맥락에서는 이러한 비편향성으로서의 중립성이 민주시민교육의 유효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빈번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비편향성으로서의 중립성에 대한 판정은 판정 주체의 주관이 강하게 반영된다. 따라서 교육적 중립성이 강조되면 어떤 면에서든 편향적이지 않은 교육 내용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거기에 편향성에 대한 처벌이나 사회적 비난까지 가세하면 교육자들은 조금이라도 중립성 논쟁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 내용은 교육과정에서 제외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특히 더 많은 교육이 요청되는 내용들만 골라서 역으로 교육과정에서 배제해버리는 결과가 빚어진다. 요컨대, 교육적 공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민주시민교육은 이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나는 민주시민교육의 본성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다원성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시민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특수한 요구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연구진이 볼 때, 전자의 어려움은 부득이한 것이며, 후자의 요구는 불합리한 것이기는 하지만 교육의 비편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한에서 그러한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민주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사회적 다원성과 비편향성으로서의 중립성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합당한 범위 내에서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겠다.

2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구체화 요건

이상의 논의를 통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분명해졌으리라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의미 규정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민주시민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과 시행령,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배경적으로 헌법 등에 의해 내용이 제한된다. 이를 통해 전술한 어려움도 상당 부분 극복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민주시민학교는 민주화운동기념관, 더 상위 기구로는 사업회에 의해 운영된다. 그런데 사업회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아래에 인용되어 있는 것처럼 사업회의 사업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의 목적과 내용이 개략적이거나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런 면에서 민주시민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 일반에 비해 그 내용과 범위가 상대적으로 특정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³⁾

제6조(사업)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2.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3.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 관리, 조사, 홍보 및 연구
4.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5.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6.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이 중에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4항과 5항이다. 이들은 민주시민교육의 목적과 연계시킬 수 있는 조항으로 각각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 그리고 민주 발전 지원을 사업 목적으로 특정하고 있다. 물론 이를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주화 운동의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22&ancYnChk=0#0000>) (2023.8.22.) 이하 같음.

기념과 계승, 그리고 민주 발전 지원의 내용과 범위 및 교육적 반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과정 정립과 관련된 다른 요건, 내용 등이 아직 소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상세한 논의를 전개할 수는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일단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이 민주화운동의 기념과 계승, 민주 발전 지원임을 확인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더욱 상세한 논의는 II-5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첫 번째 요건의 연장선상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과 시행령,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준거 요건이 되는 역사적 사건들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인천5·3민주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⁴⁾

제2조(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 10. 20., 2010. 6. 28., 2013. 3. 23., 2013. 10. 30., 2014. 11. 19., 2017. 7. 26.>

1.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9254#0000>) (2023.8.22.)

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5. 18.] [법률 제13289호, 2015. 5.]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2028&ancYnChk=0#0000>) (2023.8.22.)

이상의 인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준거가 되는 민주화 운동은 추상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시민 활동이며, 구체적으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과 시행령에 언급된 역사적 사건들이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가 무엇이었는지, 또 그에 누가, 어떻게 항거했으며 경과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주제적, 사실적(事實的) 구체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 구성에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수준의 구체화가 요구되지 않으며, 다른 영역에서의 민주시민교육 논의는 전제 조건이나 내용, 범위 등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민주시민교육의 모든 내용이 분명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크게 축소되는 것은 분명하다.

셋째, 전술한 요건들처럼 법적, 사실적 조건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인해 교육적 중립성 논란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는 점 또한 언급될 필요가 있다. 전술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중립성은 비편향성으로 해석,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누구에게도 비편향적인 교육이 가능할까? 반드시 정파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교육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편향적 교육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편향성 자체보다도 교육 대상자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교육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민주시민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 참여의 자율성을 전제하고 있다.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비군 교육이나 시험을 보는 학교 교육과 달리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은 개별적인 교육 참여자, 또는 교육 참여 기관이 참가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은 중립성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기 어려운 교육 실행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으로서 사업회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또는 연구진이 선호하는 표현으로는 ‘교육적 균형’을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또한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한결 완화된 형태로 존재한다. 민주시민교육의 중립성이 문제 되는 일반적 맥락은 교육 내용과 범위, 방식 모두에 적용되는 문제였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은 대강의 내용과 범위가 법률로 이미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내용 및 범위와 관련해서는 중립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적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 제안 부분에서 더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은 민주시민학교에서 직접 교육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균형성의 기초하에 위탁 교육을 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규정적 의미와 내용 요소

그러면 이러한 요건들을 반영하는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는 어떻게 특정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지만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면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구체화 요건을 올곧게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존 연구는 사업회의 민주시민교육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특히 학술적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진은 먼저 민주시민교육의 형식적, 원리적 정의에서 출발하여 여기에 전술한 법률적 요건을 반영하여 더욱 구체적인 의미를 추출, 제안하고자 한다. 이후 전문가들의 비평을 반영하여 더욱 정교화된 교육과정 정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면 먼저 민주시민교육의 형식적 정의에서 논의를 시작해보도록 하자. 가령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 실천 활동 등과 관련된 교육’이라고 정의한다면 틀린 말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무언가 많이 미흡하다고 느껴질 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정의는 민주시민교육의 문언적(literal) 의미일 뿐, 그것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주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는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추출하거나 실제로 민주시민교육을 행하는 데에 그 자체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연구진이 여기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환기하고 이후의 논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형식적 정의는 단순히 논의의 출발점으로만 기억되면 충분하다.

민주시민교육의 형식적 정의에 이견 없이 가장 먼저 추가될 수 있는 내용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들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본 원리는 이러한 원리를 전제하지 않고는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 부를 수 없게 하는 원리들, 곧 민주주의의 본성을 구성하는 원리들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인간 존엄성, 국민 주권, 상호 존중의 원리 등을 수용하지 않는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원리들은 비록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별다른 이의 없이 민주시민교육의 의미 규정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는 인간 존엄성, 입헌주의, 국민 주권, 법치주의, 정치적 투명성, 권력 분립, 공공성, 공익성, 존중/자율/연대, 평화/정의/호혜의 시민성 등을 들 수 있다.⁶⁾

이러한 기본 원리는 전술한 것처럼 민주주의의 본질적 이념을 반영하는 것들이므로 학술적으로는 특별히 정당화가 필요 없는 사항들이다. 그러나 정당화 근거의 문제를 모든 사람이 학술적 맥락에서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우리 사회에 이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우리 헌법과 법률을 원용하고자 한다.

6)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견해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훨씬 범위가 넓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하의 논의를 위해 필요한, 즉 민주화 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만을 열거했다.

먼저 인간 존엄성의 원리는 우리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생략)…”에서 도출될 수 있다. 여기에서 인간 존엄성(human dignity)은 우리 헌법을 만든 이유이며 헌법의 최고 원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제1조 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부터 국민 주권의 원리가 도출된다. 또, 우리 헌법은 헌법을 제정하여 국가를 창설하고 국가가 헌법에 따르도록 하고 헌법에 반하는 내용을 가진 법률은 무효로 만드는 위헌법률심판(제107조 제1항, 제111조)을 두고 있다. 이로부터 입헌주의, 법치주의의 원리가 근거 지워 질 수 있다.

정치적 투명성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동법 제1조에서는 “…(생략)…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권력 분립은 단일한 조문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조문들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공공성과 공익성 역시 다양한 헌법 조문들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34조 제1~5항을 비롯하여, 제23조 제2항, 제46조 제2항, 제119조 2항, 제120조 2항, 제122조, 제123조 2, 3항 등이 모두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우리 헌법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엄밀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주제로서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별도의 해석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시민성은 일종의 원리나 덕목에 해당되므로 헌법에 직접적으로 이와 관련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술한 존중/자율/연대, 평화/정의/호혜는 헌법 전문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선언과 국가에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제10조, 나아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서술하고 있는 헌법 제2장 전반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헌법 제31조에는 교육기본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주 시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헌법 제정자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민주주의의 형식적 정의에 민주주의의 공통적 기본 원리를 반영하면 민주시민교육은 합의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화 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원리적 규정〉

인간 존엄성과 입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이념, 국민 주권, 법치주의, 정치적 투명성, 권력 분립, 공공성, 공익성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제도, 그리고 존중/자율/연대, 평화/정의/호혜를 바탕으로 하는 실천 활동 등과 관련된 교육

좀 더 간략하게는 아래와 같이 서술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 실천 활동 등과 관련된 교육

그런데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은 전술한 사업회 민주시민교육의 구체화 요건들로 인해 이상의 일반적 규정, 즉 원리적 규정보다 더욱 상세한 형태로 서술될 수 있다. 가장 먼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을 추가할 수 있을 터인데, 이를 반영하면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 된다.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은 인간 존엄성과 입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이념, 국민 주권, 법치주의, 정치적 투명성, 권력 분립,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제도, 그리고 존중/자율/연대, 평화/정의/호혜를 바탕으로 하는 실천 활동 등과 관련된 교육으로서, 특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민주화 운동의 기념과 계승, 그리고 민주 발전의 지원을 목적으로 함

좀 더 간략하게 서술한다면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도 있다.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 실천 활동 등과 관련된 교육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민주화 운동의 기념과 계승, 그리고 민주 발전의 지원을 목적으로 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및 시행령,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가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체화 요건은 교육 적용 영역과 관련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민주주의 기본 원리, 가령 인간 존엄성의 원리는 적용 영역에 따라 문제가 되는 방식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이나 성전환자 강제 전역은 모두 인간 존엄성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지만, 전자는 생명권에 대한 위해인 반면에 후자는 자유권, 또는 사생활권에 대한 위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요컨대 동일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도 적용 영역에 따라 교육 주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역사적 준거 사건으로서 민주화 운동이 이러한 적용 영역을 부분적으로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구체화 방식을 표로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⁷⁾

7) 적용 영역의 대분류 주제인 인권, 민주주의, 시민성은 순전히 지칭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한 용어들이다. 간략히 부연하면, 통상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는 서로 구분하기 힘든 형태로 교차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또, 시민성이란 사실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 의식, 역량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인권', '민주주의', '시민성'은 용례적으로나 대상적으로 엄밀히 구분될 수 없다. 다만 이후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을 제안할 때, 교육과정 요소를 낱말이 열거함으로써 서술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구적으로 도입했을 뿐이다.

〈표 1〉 민주주의 기본 원리, 민주화 운동 준거 사건, 적용 영역 연결 형식

대주제	인권	민주주의	시민성
기본 원리	인간 존엄성	국민 주권	존중
준거 사건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4·19혁명
적용 영역	생명권, 참정권	선거/투표, 정부	시민 의식

부연하면,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에 이르는 일련의 민주화 운동이 계속되기 전에 이승만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심지어 살해까지 하는 반민주적 정치 행위를 계속했다. 이에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과 민주적 정부 구성을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을 계속했고, 이는 기본 원리의 측면에서는 인간 존엄성의 침해와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적용 영역의 측면에서는 시민 의식과 관련된 부분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곧 4·19혁명 및 그에 준하는 민주화 운동을 매개로 인간 존엄성의 원리와 시민 의식 등이 연결되어 교육 내용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4·19혁명과 관련하여 인간 존엄성의 원리 및 시민 의식과 관련된 논의, 교육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및 시행령과 관련된 다른 준거 사건들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며, 이를 역시 먼저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민주화 운동 준거 사건에 따른 기본 원리, 적용 영역 총괄

대주제	인권	민주주의	시민성
대표 준거 사건	5·18민주화운동	유신헌법 반대 운동	4·19혁명
기본 원리	인간 존엄성, 입헌주의	국민 주권, 법치주의, 정치적 투명성, 권력 분립, 공공성, 공익성	존중/자율/연대, 평화/정의/호혜
적용 영역	생명권, 자유권, 참정권, 저항권, 재산권, 노동권	선거/투표, 정부(입법, 사법, 행정), 지방자치제, 정당·사회단체, 국가 투명성, 언론/미디어, 공적 의사결정 구조, 공교육	시민 의식 (주권자 의식, 사회적 감수성, 공동체 의식) 시민 역량 (사회적 비판/참여 역량, 사회적 공감/성찰 역량, 사회적 협력/의사결정 역량)

우선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의 상징성은 무엇보다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은 전체적으로 시민성, 즉 존중/자율/연대, 또는 평화/정의/호혜의 원리와 관련된 민주화 운동 정신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민성의 기본 원리가 4·19혁명을 비롯한 일련의 민주화 운

동과 구체적으로 결합할 경우, 적용 영역의 측면에서는 크게는 시민 의식과 시민 역량, 작게는 각 주권자 의식, 사회적 감수성, 공동체 의식, 그리고 사회적 비판/참여 역량, 사회적 공감/성찰 역량, 사회적 협력/의사결정 역량 등의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 4·19혁명은 우선 정부의 해체를 원한 것이므로 주권자 의식과 연결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은 김주열 열사 살해 및 3·15 부정선거 등에 대한 의분의 발로이므로 사회적 감수성과도 연결된다. 또, 많은 참여자가 자신의 개인적 희생을 무릅쓰고 사회 변혁의 대열에 참여하였으므로 공동체 의식이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시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열거한 시민 역량들이 문제되거나 발전하는 정황들이 다수 발견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시민 역량과 관련된 주제들을 추출할 수 있다.

5·16 쿠데타 이후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에 이르는 일련의 민주화 운동들은 위의 표에서 민주주의와 연결시킬 수 있는 운동들이다. 이러한 운동들은 주로 선거/투표, 정부(입법, 사법, 행정) 형태, 지방자치제, 정당·사회단체, 국가 투명성, 언론/미디어, 공적 의사결정 구조, 공교육 등과 관련한 사회 문제와 연결시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전술한 것처럼 6·10항쟁과도 연결될 수 있다. 또, 5·18민주화운동은 생명권, 참정권 외에도 도시 봉쇄 등에 의한 자유권의 문제, 시민군의 저항권 행사 방식, 시민들의 자발적인 재산 공유 등과 관련한 문제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서술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사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과 시행령에서 언급되는 많은 민주화 운동이 적용 영역을 공유한다. 그런 면에서 이상의 분석은 민주화 운동 각각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급된 민주화 운동에 의해 어떤 교육 내용들이 소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준거가 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이상에 열거된 기본 원리나 적용 영역 외에 다른 교육 요소를 추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현재 이 연구의 목적이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을 제안하기 위한 것인 한에서 이러한 모든 교육 요소를 추출하여 제시하기보다는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꼭 필요한 요소만 우선적으로 열거한 것임을 밝혀 둔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의미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인권, 민주주의, 시민성 등의 적용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특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민주화 운동의 기념과 계승, 그리고 민주 발전의 지원을 목적으로 함

■ 민주주의 기본 원리: 인간 존엄성, 입헌주의, 국민 주권, 법치주의, 정치적 투명성, 권력 분립, 공공성, 공익성, 존중/자율/연대, 평화/정의/호혜

■ 적용 영역

□ 인권: 생명권, 자유권, 참정권, 저항권, 재산권, 노동권

- 민주주의: 선거/투표, 정부(입법, 사법, 행정), 지방자치제, 정당·사회단체, 국가 투명성, 언론/미디어, 공적 의사결정 구조, 공교육
- 시민성: 시민 의식 (주권자 의식, 사회적 합리성, 공동체 의식), 시민 역량 (사회적 감수성/참여 역량, 사회적 공감/성찰 역량, 사회적 소통/합의 역량)

이제까지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규정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많이 진척되었다고 할 수 있다.⁸⁾ 후술하겠지만 주제 중심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보면 이상의 규정을 통해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적용 영역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 양자의 결합으로서 구체적인 교육 주제들 또한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하에서 살펴볼 것처럼 이는 주로 민주화 운동의 기념 및 계승과 관련된 민주시민교육 요건이지, 민주 발전의 지원 내용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념, 계승이 민주 발전과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한 의견 개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이렇듯 법령을 통해 도출된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 의미 규정이 학술적으로도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II장에서는 4, 5절을 통해 이러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최종적 제안은 III장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적용상의 유의점을 포함하는 더욱 완비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4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 의미 규정의 학술적 정합성 검토

전술한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의미 규정은 사업회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학술적 내용 규정을 토대로 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이 법적, 학술적으로 무근거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민주시민학교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온전히, 적절히 포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문적 관점이나 학자에 따라 이견이 제시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연구진이 이러한 이견을 모두 검토할 수는 없겠지만, 역량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어떤 쟁점 형성이 가능하며, 또 이와 관련하여 연구진이 제안한 교육과정의 강점과 약점을 이하에서 간략히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학술적 맥락에서 보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미 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적

8) ‘민주시민교육의 규정적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한 자문인의 지적이 있었다. 우선 다소 낮은 표현이어서 연구진도 처음부터 고심했지만, 다른 대안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대로 사용했음을 고백한다. 여하간 여기에서 ‘규정적’이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나 법에 있는 그대로 서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과 공통적인 학술적 요건에서 연구진이 논리적으로 추출한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 표현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본 연구진이 제안한 민주시민교육의 정의는 사실적이지도, 당위적이지도 않지만,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현하고자 했다.

현실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미 규정은 불가능하며, 단지 자신이 제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의미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정당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밝힐 수 있을 뿐이다. 하물며 여기에서 제안한 민주시민교육은 학술적 맥락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실천적, 즉 법적, 제도적 맥락에서 추출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은 학술적으로 정당화될 수도 없지만, 학술적 정당화가 요청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연구진의 제안과 기존의 학술적 의미 규정이 서로 크게 어긋난다면, 이는 심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것은 적어도 민주시민교육에 특정한 학술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연구진의 제안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간주될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하의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 의미 규정에 대한 학술적 검토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즉 직접적인 정당 근거를 구하는 방식보다는 정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먼저 법학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가령 김선택은 “시민교육은 인간이 자신이 속한 정치공동체의 공동의 문제에 대하여 적절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민이 되도록, 즉 정치적 성숙도(politische Mündigkeit, 정치능력)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정치적 사회화과정을 일컫게 되었다.”⁹⁾고 서술한다. 이러한 의미 규정은 내용적으로 공공성과 시민 역량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학교 의미 규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기본 원리의 공공성과 적용 영역 중 시민성 영역의 시민 역량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김선택의 의미 규정은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 의미 규정과 정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가령 정치학자인 유석렬은 민주시민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¹⁰⁾ “민주시민 교육이란 좁은 의미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의 시민이 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떳떳이 행사하며,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훌륭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시키는 하나의 정치교육이다. 그러나 보다 균형 있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민주시민 교육이란 단순히 정치 교육적 차원을 넘어서 경제교육, 사회교육, 반공교육, 국민윤리교육, 민족교육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의미 규정은 김선택의 경우와 달리 연구진이 제안한 민주시민교육 의미 규정과 대립되는 내용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다. 우선 유석렬은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연구진의 제안에는 권리에 대한 항목은 있지만, 의무나 책임에 대한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연구진이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지 않은 것은 우선 의무나 책임은 권리나 자율에 따른 것이므로 내용 요소에 권리와 자율만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의무나 책임을 언급할 경우, 그것들이 권리나 자율과는 별개로 시민 활동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인식도 있었다. 나아가 암묵적으로 민주화 운동 자체가 시민의 권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9) 김선택, 2017: 21.

10) 유석렬, 1986.

사회 운동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렇더라도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서술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연구진이 제안한 의미 규정이 최소한 시민의 의무와 책임을 논하는 것을 가로막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유석렬의 의미 규정에 반하는 것은 아니며, 그런 면에서 이러한 차이만으로 유석렬의 민주시민교육 규정과 연구진의 제안이 정합적이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외에도 유석렬의 제안에는 정치교육 외에 경제교육, 사회교육, 반공교육, 국민윤리교육, 민족교육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교육이나 사회교육은 연구진의 제안과 충돌할 것이 없지만 반공교육, 국민윤리교육, 민족교육 등은 논란이 될 수 있다. 국민윤리교육은 공식적으로 이미 폐기되었고, 민족교육은 다문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실천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지 않다. 다만 반공교육은 아직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연구진이 제안한 민주시민교육 의미 규정이 내용적으로 반공교육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용 요소에 민주주의 이외에 다른 이념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반공교육 자체를 내용 요소로 확정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 면에서 만약 반공 교육이 내용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면, 반공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나 적용 영역의 특정 항목과 연계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은 관련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민주화 운동을 토대로 하고 있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무고한 많은 사람이 공산주의자로 몰려 처벌을 받았던 사실을 환기한다면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반공교육이 주제적으로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외, 정문성 외 사회과 교육 전공자들이 공저한 보고서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사회의 각 분야에서 자신의 권리를 합리적, 반성적으로 행사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지식, 기능 및 사고, 가치·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정의한다.¹¹⁾ 또, 본 보고서의 참여자이기도 한 정원규가 포함된 다른 보고서에서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학생들이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그에 따라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자신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에 확장 적용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는 교육”으로 정의한다.¹²⁾ 각각 합리성 및 반성을 강조하고, 정부를 포함한 교육 주체의 역할을 ‘지원’에 한정된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양자 모두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민주시민교육의 의미 규정과 정합적이다.

국외적으로 영국의 크릭 보고서에서는 학생 대상의 민주시민교육을 “학생들이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참여와 실행의 의미를 알고, 시민으로서의 권리, 의무, 책임을 이해하며, 공동체 활동이 개인과 사회에 주는 가치를 깨닫도록 돕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¹³⁾ 역시 본 보고서의 제안과

11) 정문성 외, 2018: 20.

12) 정원규 외, 2019.

정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규정은 각각 인간 존엄성과 세속주의를 강조하는 전통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구나 대상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달라진다.¹⁴⁾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 요소의 측면에서 보면 크릭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본 보고서에 제안한 내용과 정합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미국, 스웨덴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지만, 이상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유석렬과 같은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본 보고서의 내용 요소와 정합적이지 않은 민주시민교육 규정을 찾기 어려웠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민주시민교육의 의미는 비록 관련 법령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학술적 규정을 활용하였고 내용 요소 또한 항목 수준에서만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준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규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형식적, 내용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정합성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구체성을 결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본 연구진이 제안한 교육과정이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공허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안한 민주시민교육의 규정적 의미와 내용이 더욱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은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을 적절히 해석함으로써 이러한 구체화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그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와 관련된 논란과 연계하여 다음 절에서 검토한다.

5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 목적의 재구성과 범위 규정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왜 별도로 필요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대상 개념이나 원리의 내용과 범위를 구분해서 논의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내용이 확정되면 범위도 따라서 확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가끔 존재하는데,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가령 특정한 교육 내용을 민주시민교육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림으로 인해 민주시민교육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반공 교육, 또는 국가보안법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등이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서로 다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이 양자를 민주시민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물음, 즉 민주시민교육 범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범위가 문제되는 두 번째 맥락은 민주시민교육, 더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 이념의 과정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꽃밭 가꾸기 교육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볼 수

13) Crick, B, 199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역), 2008.

14) 독일은 박순용 외, 2023: 45-47. 프랑스는 Heater, D. 2007: 3장 2절.

있는가'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마을 공동체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꽃밭 가꾸기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인가'라고 물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공적 의사결정 훈련 과정의 일환으로 꽃밭 가꾸기 교육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시민교육의 범주에 그것을 포함시킬 것이다. 동일한 소재의 교육에 대해 이처럼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 나아가 민주시민교육은 그것의 소재나 주제보다 거기에 맥락과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process)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재나 주제와 관련해서는 그것을 민주시민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애매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정황으로 인해 민주시민교육 범위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범위 문제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방법, 또는 교수·학습 과정과 관련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권력 분립과 관련된 교육은 통상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겠지만, 그러한 교육이 주입식으로 이루어지거나 강요된다면 그것은 민주시민교육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내용뿐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의 민주성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언뜻 생각하면 이러한 문제는 두 번째 경우와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 경우는 민주시민교육의 범위는 소재와 과정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임에 반하여, 여기에서는 과정 자체의 민주성을 고려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분된다.

이렇게 보면,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에서 범위의 문제는 우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전술한 것처럼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원리적 규정에 더해 법률 및 그에 근거한 역사적 준거 사건을 토대로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민주시민교육의 방법 및 교수·학습 과정과 관련해서도 범위 문제는 교육적 중립성의 문제를 제외하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사업회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시민교육에서는 교육 참여자가 교육 프로그램에의 참여 및 중단을 전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또 민주시민학교에서도 당분간 그러한 기초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사업회가 공공기관인 한에서 전술한 것처럼 교육적 균형성은 확보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III-3에서 다시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에서 문제되는 범위 문제는 두 번째 문제, 즉 민주시민교육의 주제나 교육과정에 맥락과 의미가 부여되는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민 주권, 상호 존중 등을 주제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고 할 때, 이러한 주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다. 특히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역사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 가령 어떤 사람은 민주시민교육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교육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그것이 민주주의의 미래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다행히 이와 관련해서도 법률이 그 범위를 상대적으로 명료히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전술한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목적, 즉 민주화 운동의 기념, 계승 및 민주 발전이 그것인데, 그러나 그러한 기념, 계승, 민주 발전의 내용이 무엇인지까지는 분명히 서술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진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념의 문언적 의미는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함’ 정도로 표현될 수 있다.¹⁵⁾ 이것만으로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에서 기념의 의미를 구체화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해석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이러한 문구를 구성하는 의미 요소 중에서 ‘뜻깊은’, ‘훌륭한’ 등은 순전히 과거의 관점만으로는 판단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카(E. H. Carr)의 유명한 문구처럼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unending) 대화”이다.¹⁶⁾ 역사는 사실에 기반해야 하지만 과거의 사실들을 해석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역사가, 곧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기념’은 일차적으로 역사적 사건의 현재적 의미를 확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 확인 없이는 그러한 사건이 기념의 대상이 되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념’은 이처럼 현재적 의미를 되새기는 것을 넘어서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행위여야 한다. 단순히 과거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만으로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한 사건이 사람들 각자나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각인하는 과정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한 목적으로서 ‘기념’은 민주화 운동의 현재적 의미를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회적, 개인적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공유 체험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6·10항쟁 교육의 예를 통해 민주화 운동의 현재적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을 살펴해보도록 하자.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서 6·10항쟁을 기념한다면, 그것은 사건의 경과를 소개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도 이미 6·10항쟁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기념 활동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기념이 6·10항쟁의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와 달리, 현재적 의미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6·10항쟁의 기념은 사건의 경과에 따른 현재적 변화, 가령 헌법의 변화 외에 그것이 우리의 사회적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현재 우리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6·10항쟁의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는 교육 참여자도 현재적 의의에 비추어 6·10항쟁의 의미를 더 쉽게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교육 참여자들이 그때와 동일한 상황에

15) 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 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69ad9e6f8fb34f8daf77dfbfdbafb437>, 2023. 8. 17)

16) Carr, E. H., 1961: 24.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그로 인한 변화를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게 할 수도 있다. 교육 참여자는 이를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현재 6·10항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다. 즉, 6·10항쟁에 대한 공유 체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기념은 이처럼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되뇌이는 것을 넘어서 그것의 현재적 의미와 의의를 공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계승’은 민주화 운동의 현재적 의미와 사회적 연관을 지금의 시점에서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현재적 성찰을 포함한다. 부연하면, 가령 선거함에 미리 기표된 투표 용지를 다량으로 넣어두거나 3~5인이 함께 투표하게 하는 식의 선거 부정은 4·19혁명 이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4·19혁명의 계승이 만약 이러한 식의 선거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러한 계승은 현재 시점에서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새삼스럽게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이 거론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한 목적으로서 계승이 의미를 지니려면, 과거 민주화 운동의 사회적 성과를 단순히 현재 시점에서 확인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으로서 계승은 전술한 현재적 성찰, 즉 과거 사건의 진행 과정과 성과를 사건 그대로가 아니라 판단의 배경과 기준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음을 의미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재적 성찰은 두 가지 계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민주화 운동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정권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형태의 생명권 침해는 6·10항쟁 이후 많이 감소했지만, 군 의문사 사건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형태의 생명권 침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생명권 외에도, 자유권, 참정권, 또는 국가 투명성, 공교육 등과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다. 민주화 운동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그런 면에서 민주화 운동의 정신 하에 그러한 잔존 문제들을 발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계승의 첫 번째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민주화와 관련된 당면 문제들은 이처럼 형태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역적 특성에 따라 잔존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변화에 편승하여 완전히 변형된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언론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오래된 민주주의의 과제이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양상은 시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현재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가짜뉴스, 댓글 테러, 혐오 표현 등은 바로 이렇게 변형된 언론 문제들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 면에서 계승의 두 번째 형태는 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성과를 변형된 현재 문제들에 적용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 발전은 ‘발전’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서 의미 해석의 어려움이 더욱 큰 항목이다. 하지만 기념과 계승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한다면 대체적인 방향이 드리워질 수 있다. 우선 시간적으로 보면, ‘기념’은 역사적 사건의 현재적 의미 이해를 위한 것이며, ‘계승’은 역사적 사건으로 현

재를 성찰하는 활동이다. 즉, 기념은 과거, 계승은 현재와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보면 ‘민주 발전’은 자연스럽게 미래를 위한 것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또 공간적으로 보면, ‘기념’의 범위는 이미 발생한 민주화 운동에 한정되어 있다. 반면에 ‘계승’은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까지 확장된다. 역시 이렇게 보면 ‘민주 발전’은 민주적 문제의식을 공간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 발전은 민주주의 문제의 시간적, 공간적, 즉 미래적, 지구적 확장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민주 발전은 문화 다양성, 양성 평등, 성소수자 보호, 사회권, 세계시민성 등의 교육 내용을 포괄할 것을 요구한다. 그 외에 준거 사건을 통해 구체화 되지 못한 사회권이나 숙의 및 참여 절차 등의 주제도 민주 발전 영역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으로서 민주화 운동의 기념은 민주화 운동의 현재적 의미를 확인하고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사회적, 개인적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공유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으로서 민주화 운동의 계승은 민주화 운동을 배경 관점,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에 대한 성찰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으로서 민주 발전은 미래적, 지구적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문제를 탐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 내용의 적용 범위는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총괄하는 것이며, 공간적으로 우리나라의 울을 넘어 지구적 주제를 포괄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에서 교육 목적에 따른 교육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라 해야 할 것이다.

III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구성 방안

1.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의 특징
2.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 요소
3.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유의점
4. 국내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의 보완점과 시사점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구성 방안

1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의 특징

교육과정(curriculum)이란 라틴어 currere에서 유래한 말로, 경마장에서 말이 달려 가야할 ‘코스’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개인적 경험으로서 ‘코스 달리기’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자는 명사적 의미로 ‘코스’에 초점을 두며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할 결과를 의미하고 공식적인 문서의 형태로 제시된다. 이와 달리 후자는 동사적 의미로 ‘달리는 과정’에 초점을 두며 교수학습과정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교육과정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교육과정은 계획된 교육과정, 실행된 교육과정, 경험된 교육과정 등 다양한 층위를 가지며, 공식적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 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¹⁷⁾ 등 의도적, 비의도적 측면에서의 교육 경험과 결과를 포괄하기도 한다.¹⁸⁾ 그리고 이처럼 사용 맥락에 따라 교육과정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므로 가령 모든 맥락에서 통용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같은 것은 제시될 수가 없다. 따라서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에 맥락을 부여하는 사회적 배경, 교육 주체나 대상의 특징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현재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이 요청되는 사회적 맥락은 무엇보다 교육 목적과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사업회의 활동 자체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교육 목적과 내용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합의가 최소한도나마 가능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교육 목적과 내용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이미 기념, 계승, 민주 발전 지원과 준거 사건 등으로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지만, 교육 내용까지 적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에 대한 적절한 해석 및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 방법이나 평가 관련 규정도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민주시민학교에서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다가 학교에서와 같이 평가의 엄밀성에 크게 유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

17) 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은 아이즈너(E. W. Eisner)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교육과정에 주목하여 개념화한 것으로, 영어의 ‘null’이 의미하듯 ‘없는’ 혹은 ‘비어있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즉 영 교육과정은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선택되지 않은 혹은 배제된 교육과정이다(소경희, 2017: 53).

18) 전반적인 내용은 (소경희, 2017.)을 참조하라.

법과 관련하여, 교육적 중립성과 민주성의 제약은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III-3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면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은 무엇보다도 주제 중심 교육과정의 형태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연하면, 가령 초·중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은 학년, 교과, 단원 등의 연계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민주시민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은 차시의 교육 활동만이 가능하므로 여기에는 이처럼 시계열적 연계를 전제로 하는 교육과정은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교육 활동의 목표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특정한 활동이나 쟁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을 규율하기에 적합한 기준은 학령에 따른 발전 단계나, 교육 활동 방식보다는 교육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의 목적은 전술한 것처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민주화 운동 정신의 계승과 발전, 민주 발전의 지원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또 그 해석과 관련해서는 II-4에 상세히 서술한 바와 같다. 이러한 목적이 교육 내용과 연결되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는 다음 절에서 교육 내용을 서술한 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또, 민주시민학교가 성인교육기관, 또는 학교의 교육기관임을 고려할 때, 평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일 수밖에 없지만, 교육 효과에 대한 자체 평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러한 자체 평가 기준은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 부분이 결정된 후에야 가능한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추후 과제로 보류해둘 수밖에 없을 듯하다.

교육 방법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성인 학습자의 경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물론 청소년도 교육 대상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청소년 교육의 경우보다는 성인 학습자와 유사한 학습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령 Knowles(1970)는 성인학습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¹⁹⁾ 첫째, 성인학습자는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학습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자 한다. 둘째, 성인학습자는 자기주도적 성향이 강하고, 자신의 결정과 삶에 책임을 지고 싶어 한다. 셋째, 사람이 성숙함에 따라 학습의 자원이 되는 경험이 축적되고 증가하게 되는데, 성인학습자는 청소년들에 비해 질적 및 양적으로 훨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넷째,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에 대해 학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섯째, 생활중심적, 과업중심적, 문제중심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한다. 여섯째, 무엇보다 자발적 동기에 의해 학습하는 성향이 강하다. 흥미로운 것은 성인 학습자의 이러한 특징이 민주시민교육에서 이상적인 것으로 보는 학습 태도와 유사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천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성인 학습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민주시민교육이 학습자의 이러

19) 김혜경·윤희정·진성희, 2019: 150.

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교육 내용과 무관하게 학습자의 만족도를 매우 떨어트릴 것으로 예상된다.

2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 요소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을 반영한 교육과정 요소 중에서 먼저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II-3에 서술된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규정적 의미에 따르면,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서술될 수 있다.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의 목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민주화 운동의 기념과 계승, 그리고 민주 발전의 지원

기념, 계승, 민주 발전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II-5에서 아래와 같이 서술한 바 있다.

〈표 3〉 기념, 계승, 민주 발전의 포괄적 의미

목적	의미
기념	역사적 사건으로서 민주화 운동의 현재적 의미 이해 - 역사적 사건의 현재적 의미를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회적, 개인적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공유 체험함
계승	역사적 사건으로 현재를 성찰하는 활동 - 과거 사건의 진행 과정과 성과를 판단의 배경과 기준으로 활용하여 현재 문제들에 적용함
민주 발전	민주적 문제의식의 시간적, 공간적 확장 - 민주주의 문제의 미래적, 지구적 확장

앞 절에서 서술한 것처럼 주제 중심 교육과정을 전제할 때, 기념과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 내용 요소는 상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기념과 계승은 민주화 운동을 전제하고, 이러한 전제에 따른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 즉 교육 주제는 II-3에 이미 제시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 발전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념, 계승의 전제가 되는 민주화 운동 이외의 주제도 포함될 수 있다. 민주 발전은 민주적 문제의식의 시간적, 공간적 확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장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론을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사업회 구성원이 자율적

으로 선정하여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선정이 순전히 자의적일 수는 없으므로, 국가와 시민 사회, 세계시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함께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서술은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에서는 일단 국내외적으로 보편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추정되는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인간환경선언,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을 토대로 기념, 계승과 중첩되지 않는 주제를 예시하였다.²⁰⁾

〈표 4〉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내용 요소

대주제	목적	인권	민주주의	시민성	비고 (주제 영역)
민주화 운동의 기념, 계승		인간 존엄성, 입헌주의	국민 주권, 법치주의, 정치적 투명성, 권력 분립, 공공성, 공익성	존중/자율/연대, 평화/정의/호혜	기본 원리
		생명권, 자유권, 참정권, 저항권, 재산권, 노동권	선거/투표, 정부(입법, 사법, 행정), 지방자치제, 정당·사회단체, 국가 투명성, 언론/미디어, 공적 의사결정 구조, 공교육	시민 의식 (주권자 의식, 사회적 감수성, 공동체 의식) 시민 역량 (사회적 비판/참여 역량, 사회적 공감/성찰 역량, 사회적 협력/의사결정 역량)	적용 영역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인천5·3민주항쟁, 6·10항쟁 등			준거 사건
민주 발전 지원		기후, 환경, 인구, 문화 다양성, 문화 정체성, 양성평등, 성소수자 보호, 난민, 국제 연대(통일), 종교의 자유, 사회권, 휴식과 여가의 권리, 교육권, 예술 향유, 과학의 혜택 공유 등			미래, 세계 영역

20) 민주 발전 주제는 세계인권선언(UN, <https://www.ohchr.org/en/human-rights/universal-declaration/translations/korean-hankuko>, 2023.12.11.)과 인간환경선언(UN, <http://www.davincimap.co.kr/davBase/Source/davSource.jsp?Job=Body&SourID=SOUR001154>, 2023.12.11.), 그리고 문화다양성선언(UNESCO, https://uneskokor.cafe24.com/assets/data/standard/3lw0SeSGpBv99y0PDA4PUbQjuVeMAG_1216566000_1.pdf, 2023.12.13.)을 참조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서술이 민주 발전 항목에 또 다른 주제를 추가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오독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전술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법령, 여론, 구성원의 합의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주제가 추가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추가는 전술한 것처럼 반드시 적절한 근거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연하면, 이상의 표는 II-3의 내용에 준거 사건과 민주 발전 관련 주제가 추가된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인권, 민주주의, 시민성은 단순히 분류의 편의를 위한 범주 표기 용어로서 준거 사건, 기본 원리, 적용 영역에 따른 속성을 대략적으로 지칭하는 것 외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그리고 기본 원리의 내용과 정당 근거, 적용 영역의 추출과 정당 근거 또한 II-3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준거 사건과 관련해서는 먼저 기본 원리와 적용 영역에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교육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내용이 모두 포함되므로 순전히 내용적으로는 이처럼 준거 사건이 추가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준거 사건을 추가한 것은 교육 주제를 내용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적 맥락을 고려한 것이다. 교육적 맥락에서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민주화 운동 자체를 주제로 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민주화 운동을 준거 사건의 형태로 언급하지 않으면 민주화 운동 자체를 교육 주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현실적 우려도 반영했다.²¹⁾ 민주 발전과 관련한 주제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범세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주제들을 예시했다. 전술한 것처럼 이는 일종의 범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회, 또는 민주시민학교 재량으로 적절한 과정을 거쳐 주제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상의 교육과정은 주제 중심 교육과정 중에서도 대주제 형태로 구성된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교육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밝혀 둔다.

이렇게 제시된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목적과 교육과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국내외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과 비교 검토를 통해서 더욱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진의 역량과 주제의 한계로 인해 정해진 연구 기간에 이러한 비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2022년에 박순용 등이 「민주인권기념관 기반 민주시민교육 증장기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고, 여기에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사업회 내외의 비판적 요청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²²⁾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자료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선은 이러한 요청에 비추어보는 것만으로도 연구진이 제안한 교육과정이 실천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가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연구에 따르면 우선 관련 FGI 참석자들은 크게는 민주주의 정신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주 내용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기본 커리큘럼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을

21) 준거 사건을 이처럼 법, 또는 시행령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사건에 한정하는 것은 민주화 운동의 범위를 너무 좁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김육훈의 비평이 있었다. 연구진도 이에 동의하며, 아울러 김육훈이 추가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법률 자체에서도 민주화 운동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적 가치 실현 및 민주헌정실서 확립에 기여하고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사건’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여기에서 준거 사건을 한정하는 것은 교육과정 구성을 위해 확실한 준거를 적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화 운동 보상심의회에서 출판한 백서나, 사업회의 민주화운동사 등의 연구 성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김육훈의 제안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은 방법론적으로 교육과정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때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2) 박순용 외, 2023.

주 내용으로 하는 특별 커리큘럼의 관계,²³⁾ 작제는 기본 커리큘럼 내에서 “과거의 역사에 대한 지식 습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의 역사, 그리고 정신과 가치에 대한 공감에 바탕을 두고 현재 당면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문제해결 역량으로 연결되는 ‘살아 있는 역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²⁴⁾ 그런데 위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충실히 문제화 하기는 했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가령 위 보고서 <표 IV-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기대하는 민주시민교육 커리큘럼 종류를 보면 ‘환경, 인권 교육’이 기본, 특별 커리큘럼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²⁵⁾ 양자가 매우 광범위한 세부 주제를 포괄하는 개념임을 감안하면, 결국 기본, 특별 커리큘럼이 내용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연구진이 제시한 교육 목적, 과정은 전술된 문제들에 대해 명료한 기준을 제시한다. 박순용 외 연구의 용어를 차용한다면 기본 커리큘럼은 교육 목적상으로 기념과 계승에 해당되는 교육 내용에, 특별 커리큘럼은 민주 발전과 연결된 교육 내용과 연결된다. 이렇게 보면 동일하게 환경이나 인권 문제를 다루더라도 기본 커리큘럼에서는 실제 역사적으로 발생한 사건, 쟁점이 교육 주제가 되며, 특별 커리큘럼에서는 주제 선택의 범위가 공간적, 시간적으로 훨씬 자유롭게 확장된다.

아울러 기념과 계승에 대한 의미 규정은 ‘살아 있는 역사교육’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역사적 사실과 현재의 연관성을 부인할 경우, 그러한 역사교육은 이른바 박제화된 역사교육이 될 것이다. II-5에서도 설명했지만, 기념은 민주화 운동의 현재적 의미를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 즉 교육 수행자 및 참여자의 사회적, 개인적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되짚어 보는 과정이어야 한다. 실제로 현재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많은 것들이 치열한 민주화 운동의 결과이다. 여기에서 출발할 때, 과거를 한갓 지나가 버린 일로,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일부 사람들의 일로 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또, 계승은 과거의 이러한 노력이 오늘날에도 계속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소극적 의미와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면 그러한 일을 누가 수행해야 하는가를 묻는 적극적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보면, 양자 모두에서 결정의 주체는 민주화 운동 참여자라기보다는 민주시민교육 참여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소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다면,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으로서 계승은 역사가 시민을 통해 현재로 뛰쳐나오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한 가지 부연해두고 싶은 것은 연구진이 제안한 교육과정은 내용 요소가 곧바로 교육 목적을 포함하는 방식으로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내용 요소는 교육 목적 중립적이다. 곧 어떤 교육 목적과도 결합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진이 제안한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할 때에는 반드시 목적과 내용 요소를 서로 구분하여 다시 결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

23) 같은 보고서, 76.

24) 같은 보고서, 74.

25) 같은 보고서, 76.

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구성의 논리성과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약점보다는 강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절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러한 교육과정이 민주시민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실천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가령 민주시민학교에서 기념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럴 경우, 자연스럽게 교육 프로그램의 소재로 민주화 운동 중의 하나를 선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선정된 민주화 운동이 가령 4·19혁명이라면, 실천적으로는 그와 관련해서 다시 어떤 것들을 교육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것은 4·19혁명과 관련하여 선택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원칙적으로 무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의 교육과정 표를 활용하면, 가령 4·19혁명과 기본 원리의 입헌주의, 적용 영역의 저항권을 연결시켜 교육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사실 교육의 목적이 기념인 한에서 상기한 교육과정의 유용성은 그다지 돋보이지 않을 수 있다. 주로 준거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나 시행령이 제공하는 내용 요소 이상의 내용이 활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의 목적이 계승인 경우는 체감하는 유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계승은 민주화 운동의 결과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의미 있는 결과를 활용하여 현재 문제를 성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령 현재적 성찰이 필요한 주제가 국민 주권이라면, 기본 원리는 국민 주권, 적용 영역은 선거/투표, 또는 정치적 투명성을, 그리고 준거 사건은 정치 체제를 변화시킨 4·19혁명, 6·10항쟁 등을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 주권과 관련하여 왜 4·19혁명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을, 6·10항쟁에는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국민 주권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국민 주권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의 목적이 민주 발전인 경우는 교육 주제 선정 및 민주화 정신과의 연결이 조금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다. 민주화 운동 자체가 과거의 사건인 데에다가 그 정신을 확장한다고 해도 적용 범위가 현재 문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식의 절충적 운영은 가능할 듯하다. 예를 들어, 환경과 관련된 주제는 준거 사건으로서의 민주화 운동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환경 문제가 인권이나 주권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한에서는 민주화 운동 정신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주로 선진국이지만 환경 문제로 인해 더 고통을 당하는 국가는 후진국이다. 또, 동일한 국가 안에서도 환경 문제로 인해 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빈곤층이다.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 환경 문제는 부분적으로 인권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앞으로 더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양성평등, 성소수자 보호 문제 등도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양성평등은 정의와 성소수자 보호는 예컨대 생명권과 연결될 수 있다. 또, 통일 문제

같은 경우도 민주화 운동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현재적으로는 분단에 의한 우리 민주주의의 왜곡과 미래적으로는 국제 연대의 문제와 연결하여 다루어질 수 있다.

3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유의점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서로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민주시민교육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교육 내용을 다룬다고 해도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는가에 따라 중립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의 발생 방식은 그 사회의 역사적 맥락이나 현실적 쟁점에 따라 다양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립성이 비편향성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의 주요한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교육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앞에 서술한 바와 같다. 연구진은 이미 서론과 II-1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비편향성으로 해석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그런 면에서 비편향성으로서의 중립성보다는 가령 독일연방정치교육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균형성(balance) 같은 개념이 차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처럼 새로운 개념을 채택할 필요도 없이 우리 헌법 규정만 참고해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처럼 비편향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²⁶⁾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의 자주성이란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을 위한 조직, 운영 등을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²⁷⁾ 가령 김철수는 “교육의 자주성이란 교사의 교육시설설치자·교육감독권자로부터의 자유, 교육내용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의 권력적 개입의 배제, 교육관리기구의 공선제 등을 포함한다.”라고 주장한다.²⁸⁾ 또, 정종섭은 유사한 맥락에서 “교육의 자주성이란 교육의 내용, 방법, 교육기관의 운영을 국가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교육이 정치권력이나 기타 세력의 간섭없이 그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조직·운영·실시 되어야 한다는 교육의 자유와 독립을 말한다.”라고 본다.²⁹⁾

그리고 교육의 전문성이란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교육에 관한 전문가가 담당하거나 이들이 참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³⁰⁾ 헌법재판소는 “교육 활동은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해

26) 이에 관한 헌법해석론은 정필운, 2022: 11장에서 가져와 이 보고서에 적절하게 일부 수정하였다.

27) 현재 2002.3.28. 2000헌마283; 정종섭, 2012: 777; 표시열, 2008: 132.

28) 김철수, 2009: 832.

29) 정종섭, 2012: 678.

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외에 인간의 성장과 발달, 행동 심리, 정신건강과 위생, 학생의 욕구 등에 관한 교육영역 고유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아울러 요구된다.³¹⁾ 이는 직접 현장에서 수업 활동과 학생 지도를 하는 교원에 국한된 요청이 아니며, 교원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여 집행하는 교육행정 영역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교육정책의 결정이나 그 집행은 가급적 교육전문가가 담당하거나, 적어도 그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³²⁾ 이러한 의미의 교육 전문성의 요청은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는 교육 자주성의 요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³³⁾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교육은 당파적 이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국가나 특정 정치세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는 한편, 교육도 정치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⁴⁾ 원래 교육의 목적 중 하나는 민주 시민의 양성이기 때문에 정치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따라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거리 유지로 해석될 수는 없다. 따라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의 당파성 배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 제5조 제2항의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다루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것을 다루되 이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균형 있게 제시하라는 명령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적 맥락에서는 흔히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와 같은 형태로 운영된다. 주지하다시피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정치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화 금지, 논쟁성 재현, 학습자 이해관계 인지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독일 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민주시민교육, 정치교육의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것이 발의된 독일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서 이를 내용적으로 보충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진 중의 한 사람인 정원규가 설규주와 공동 연구를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교육 원칙’으로 학습자 자율성 제고, 논쟁성 재현, 모든 학습자의 참여 구조화, 학습자 가치·태도에 대한 평가 최소화 등의 원칙을 제안한 바 있다.³⁵⁾ 이는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성인 대상 교육, 나아가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에도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0) 같은 책, 778쪽.

31)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판례집 3, 387, 407-408.

32) 헌재 2001. 11. 29. 2000헌마278, 판례집 13-2, 762, 773.

33) 헌재 1996. 4. 25. 94헌마119, 판례집 8-1, 433, 447, 헌재 2009. 9. 24. 2007헌마117.

34) 정중섭, 2012: 778; 표시열, 2008: 133-135.

35) 설규주·정원규, 2020: 236.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상의 중립성 문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민주시민학교에는 다양한 연령의 학습자가 참여하므로, 교육 내용과 관련한 배경지식 및 경험 수준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한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단계별로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참여자의 경우 민주화운동기념관 견학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내용에 따라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며,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인 세대의 경우에도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를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기념, 계승, 민주 발전 측면에서 훨씬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민주시민학교에는 일반 시민 외에도 공직자, 시민 활동가, 교사 등 다양한 직업군의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의 세부 교육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가령 교사의 경우, 이들에게는 직접적인 교육 효과뿐 아니라 그들이 학생에 미치는 간접적 교육 효과도 존재할 것이므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세부 교육과정을 제시하거나 교육 자료 개발 및 교수법 제안 등과 관련된 다양한 세부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민주시민학교 참여자들은 자발적 학습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의 학습의욕을 지속적으로 고취하여, 학습자뿐 아니라 교육자, 실천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진취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가령 기초, 심화, 활동가양성 등의 단계별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각 주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취하고 점차 심화된 학습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좀 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응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민주화 운동을 통해 우리가 얻은 성과에 근거하여 민주화 운동의 정신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소설 쓰거나 연극 등을 통해 개인적 체험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의미를 체현하는 방식 등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육 참여자의 자기 평가 및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자기 성찰 및 프로그램 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은 주로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학습자 대상 평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지식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의 평가가 아니라, 교육 목표,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기능적 영역의 자기 평가 항목을 제시하여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장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는 민주시민학교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습자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교육 결과 성장 정도를 확인하며 향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여섯째,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은 교육받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제

공해주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학습 의지가 있어도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과 같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수요를 조사하여 강사가 이동하여 교육을 진행하거나, 주말이나 퇴근 후 저녁 시간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적절히 활용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4. 국내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의 보완점과 시사점

이하에서는 그동안 사업회에 의해 운영되어 온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여타 국내외 교육 프로그램과의 접점을 검토함으로써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실천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우선 여타 국내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들이 본 연구진이 제안한 교육과정에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의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제시된 교육과정이 교육 프로그램 기획의 필요조건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기존에 시행되어 온 교육 프로그램은 보완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제시된 교육과정과 기존 사업회 교육 프로그램은 이와 반대의 관계를 맺는다. 제시된 교육과정은 사업회에 의해 운영되어 온 기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그것은 한편으로 기존 프로그램을 성찰하는 인식 틀로, 다른 한편으로는 적절한 보완점이나 대안을 공하는 통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보완적 시사점을 얻기 위한 국내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미국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독일의 홀로코스트 교육, 프랑스 시민교육, 제주 4·3 평화 재단, 5·18 기념 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등을 참고했다. 먼저 미국의 홀로코스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홀로코스트에 대한 교육은 서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기념관이나 시민교육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교육 대상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 미국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비교적 최근에 개관되었는데, 특징적으로 '기록을 통한 교육'과 '기록에 대한 교육'을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기록을 통한 특정 역사 사실에 대한 교육적 인식의 심화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후자는 기록이 나와 어떤 관계이며 기록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³⁶⁾ 본 연구진이 제안한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과 비교하면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으로서 기념의 현재성에 대한 강조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러

3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자료실 중 '이야기 형식으로 기억을 들려주는 워싱턴 홀로코스트 기념관'
<https://www.kdemo.or.kr/d-letter/all/page/74/post/103> (검색일: 2023. 12. 15.)

한 현재성이 ‘의미 이해’, 또는 ‘공유 체험’ 등으로 다소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와 같이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다만, 기록을 통한 교육과 기록에 대한 교육은 어떤 기록이 현재적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지까지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더욱 심화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동일하게 홀로코스트를 주제로 하더라도 독일에서의 홀로코스트 교육은 더욱 직접적이다.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인이 없었다면 홀로코스트도 없었을 것이다(No Germans, no Holocaust)”라는 『히틀러의 자발적 집행인』이라는 책의 저자 골드하겐(Daniel Goldhagen)의 언명이 1960년 이후 독일 사회 주류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적 인식하에 독일의 홀로코스트 교육은 독일 시민 모두에게 또다시 가해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적 자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에 따라 수행된다. 따라서 그 내용도 평범한 시민을 자발적인 살인 집행인으로 만들었던 나치 국가사회주의의 출현 과정과 특성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⁷⁾ 이런 맥락에서 보면 본 연구진이 제안한 교육과정은 그 구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상대적으로 분명하지 않다. 민주화 운동의 기념, 계승, 민주 발전 지원은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매우 다양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법령으로는 더 이상의 논의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추가적 논의가 불가피하며, 그러한 면에서 독일 시민교육의 예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근본적 한계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본 연구진이 제안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도 민주시민교육 이념 및 방향과 관련된 내용 요소가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환기해 두고자 한다. 제안한 교육과정을 보면 기본 원리 항목에 인간 존엄성, 입헌주의, 국민 주권, 법치주의, 정치적 투명성, 권력 분립, 공공성, 공익성, 그리고 존중/자율/연대, 평화/정의/호혜 등의 가치 지향적 이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 각각이 다시 해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구체화를 위한 추가적 논의가 완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항목들이 열거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상의 요소에 대한 논의를 배제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정도의 방향성은 담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제안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인간 존엄성의 의미가 분명히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인간 존엄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며, 나아가 인간 존엄성과 관련된 내용을 배제하려는 의도에 진행되는 민주시민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독일의 홀로코스트 교육이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불의(不義)를 주제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면, 프랑스 시민교육은 종교 간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흔히 세속주의로 명명되는 프랑스 시민교육은 시민교육에서 종교적 가치관을 철저하게 배제하며, 자유, 평등, 박애로 상징되는 이른바 혁명 정신을 고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³⁸⁾ 그런데 현재는 프랑스 교육의 세속주의적 전통,

37) 최호근, 2011: 129.

38) Heater, Derek, 2007: 3장 2절.

특히 비기독교인의 종교적 정체성을 무시하는 세속주의의 오용과 관련하여 프랑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프랑스 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그대로 답습할 이유는 없지만, 자유, 평등, 박애가 단순히 프랑스 혁명의 정신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 국민국가의 보편적 이념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민주화 정신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강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세속주의의 경우도 우리가 세속주의를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그것의 대상, 즉 종교적 갈등을 염두에 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환기해준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유교와 불교, 무속 등이 공존하는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어서, 사실상 종교 간 갈등이 심하지 않은 나라에 속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어서도 이처럼 종교 간 갈등이 우려하지 않을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종교 간 갈등을 염두에 둔 교육과정 검토가 필요하다. 민주 발전 지원과 관련하여 문화 다양성, 정체성에 대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 변화를 고려한다면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교육 주제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프랑스 세속주의 교육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내 사례를 보면 역사적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기구로는 제주4·3평화재단, 5·18기념재단 등을 들 수 있다.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2020년에도 추가 진상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교육사업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재단의 명칭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교육을 통해 학살의 아픔을 ‘평화’의 이념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³⁹⁾ 이를 제안한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과 연결 시켜 본다면, 준거 사건으로서 민주화 운동들은 배경적으로 강도 높은 인권, 민주주의, 시민성 침해 사태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민주적 가치는 그것이 구현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억압과 함께 고찰될 필요가 있는데, 제안한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연관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과정의 구조로 인해 현 단계에서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제안한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5·18기념재단의 사업은 5.18민주화운동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기념, 계승, 민주 발전의 측면에서 형식적으로 사업회와 중첩된다.⁴⁰⁾ 그런 면에서 사업회와 5·18기념재단은 상호 교류를 통해 사업의 구체성과 확장성을 신장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호 교류 방안의 모색은 특히 민주 발전의 측면에서 사업회의 사업, 교육 방향을 가름하는 범례가 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모든 민주화 운동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구체적인 맥락을 지니고 있다. 사업회는 이러한 구체적 맥락이 우리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보편적 의미를 획득하여

39) 관련 자료는 제주 4·3 평화 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했다. (<https://jeju43peace.or.kr/>)

40) 5·18 기념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https://518.org/nsub.php?PID=0301>)

후대에 계승되고, 또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 외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 조직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국립 통일교육원, 초·중등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부설기관, 미디어, 시민단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 현실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찾기 어려우며, 미디어나 시민단체의 경우는 매우 범위가 넓고 운영자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업회와 같은 공공기관의 교육에 반영할 내용을 찾기 어렵다. 선거연수원이나 통일교육원은 선거 및 통일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그것들은 한정된 주제에 대한 교육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선거나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민주시민교육의 전체적 의미가 반영되는 선거, 통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은 의무 교육과 유사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근간을 형성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적 특성으로 인해 가령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요구가 훨씬 강도 높게 제기된다. 그런데 전술한 것처럼 이러한 중립성은 종종 반(反)편향성으로 해석되어 교육적 공백만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발적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민주시민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교육 프로그램, 교육 교재 등을 개발하고 평가하여 이를 초·중등학교 교육에 반영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본 연구진이 제안한 교육과정에 따라 기존에 운영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어떤 시사점이 주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사업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은 크게 보면 연구개발, 교육 운영, 교류 협력 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민주 시민교육이 직접 이루어지는 교육 운영 부분만 보면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과정,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과정, 주민자치 아카데미, 현대사·사회참여 교사 연수,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민주주의 시민강좌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⁴¹⁾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박순용 등은 「민주화운동기념관 기반 민주시민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에서 먼저 교육기구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를 기준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확충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과정을 주제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⁴²⁾

이 보고서에서는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운영과 관련한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연구진이 중요하게 생각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임직원들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주에 대하여 기관의 고유성에 바탕을 둔 기본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러한 기본 커리큘럼은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민주시민교육으로서 기본 콘텐츠’를 담아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41) 관련 내용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 위빙(we-being)을 참고하였다. (<https://webeing.kdemo.or.kr/web/main.do>)

42) 박순용 외, 2023: 66-67.

이러한 기본 커리큘럼은 주로 역사교육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역사교육은 특정한 집단의 역사, 특정한 행위를 강조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역사교육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지식 습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의 역사, 그리고 정신과 가치에 대한 공감에 바탕을 두고 현재 당면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문제해결 역량으로 연결되는 ‘살아 있는 역사교육’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기본 커리큘럼 외에 “오늘날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특별 커리큘럼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⁴³⁾ 반면에 역사교육을 위한 콘텐츠가 충분하지 못하며 역사교육이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었다.⁴⁴⁾

주제적 제약으로 인해 더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박순용 외의 연구를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FGI에 참여한 임직원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거나 충돌하는 지점이 많이 발견된다. 임직원들 중에는 크게 보면 사업국과 센터의 역할이 중첩된다고 보고 있기도 했고, 기본 커리큘럼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람과 현재와 같이 특별 커리큘럼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병존했다. 또, 한편에서는 특정한 역사적 사실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실제로는 역사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⁴⁵⁾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새롭게 교육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엇갈림과 충돌을 반드시 민주시민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민주시민교육을 서로 보완해 주는 방향으로 반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면에서 본 연구가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듯하다.

전술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민주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을 기념, 계승, 그리고 민주 발전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이러한 구분을 앞의 논란에 비추어 적용해 보면, 기본 커리큘럼은 주로 기념과 계승에, 그리고 특별 커리큘럼은 민주 발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기본 커리큘럼과 특별 커리큘럼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도 사라진다. 적어도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양자 모두 민주시민교육의 주요한 목적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살아 있는 역사교육’과 관련된 논란도 그 범위가 극적으로 축소된다. 우선 특별 커리큘럼, 또는 민주 발전의 목적하에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역사교육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역사교육적 특수성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런 면에서 역사의 현재화는 기본 커리큘럼, 또는 기념, 계승 목적의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만 발생하는 문제이다.⁴⁶⁾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43) 같은 보고서, 73-75.

44) 같은 보고서, 78.

45) 같은 보고서, 73-80.

46) 계승 목적의 민주시민교육이 반드시 역사교육의 형태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념 목적의 교육이 역사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역사교육에 포함시켜서 이야기했다.

역사의 현재화가 기념과 계승에서 어떤 식으로 요청되는지를 분명히 했다. 기념의 맥락에서 역사의 현재화는 기념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건의 현재적 결과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6·10항쟁이 대상 사건이라면, 현재화 통로는 6·10항쟁의 현재적 결과인 현행 헌법 및 관련 정치 제도가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계승의 맥락에서 역사의 현재화 통로는 현재 문제가 되는 사태, 또는 상황이 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정신은 헌법 제정 당시부터 포함되어 있던 조항이지만 아직도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정신이 구현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현재 상태나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념, 계승, 민주 발전의 개념 구분은 사업국과 교육센터 업무의 중첩과 관련해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구도로 보면 기념 목적의 업무는 주로 사업국에서, 민주 발전 목적의 업무는 주로 교육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계승 목적 사업의 경우는 엄격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시설이나 제도와 관련된 경우는 사업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는 교육센터가 담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듯하다.

기념, 계승, 민주 발전의 구분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근거하면 기본 커리큘럼과 특별 커리큘럼, 즉 기념, 계승 및 민주 발전 목적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기념, 계승, 민주 발전의 구도에서 보면 교육 내용의 다양성 또한 이와 동일한 순서로 증대한다. 즉, 기념보다는 계승과 관련된 교육 주제가, 그리고 계승보다는 민주 발전과 관련된 교육 주제가 훨씬 다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주제의 적절성과 관련된 논란도 이와 동일한 순서로 증폭될 수 있다. 민주화 운동의 기념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서보다는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서, 또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서보다는 민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서 교육 주제에 관련된 논란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연구진은 기념과 계승 목적의 교육은 사업회 내부에서, 그리고 민주 발전과 관련된 주제는 공모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외부 단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기본, 특별 커리큘럼 운영과 관련된 논란이 축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제안을 하는 이유는 민주 발전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내부 기구가 운영하게 되면 부당한, 그리고 불필요한 편향성 논란이 발생하기 쉽다는 우리 정치 현실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물론 외부 단체를 활용한다고 해도 편향성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으로서 사업회, 또는 민주시민학교가 교육 내용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편향성에 대한 직접적 문제 제기를 비껴갈 수 있다. 또, 외부 단체 선정의 편향성은 공식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사업회의 교육 역량만으로 민주 발전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감당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외부 단체에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맡기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이런 식의 기준을 선정하는 것에 더욱 합리적인 맥락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역사교육을 위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임직원의 인식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견하기에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센터 민주시민교육은 민주 발전에 초점을 맞춘 협력 운영 방식에 비중을 두고 있었던 듯하다. 기념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 경우에는 현재적 의미 부여와 관련한 문제의식이 미흡했다. 따라서 역사교육을 중시하는 관점을 갖고 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역사교육과 관련하여 이종의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아쉬움은 민주시민학교가 기념, 계승 목적의 민주시민교육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살아 있는 역사교육, 곧 역사적 사실에 현재적 의미를 부여하는, 또 역사를 거울 삼아 현재를 비추어보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충분히 가셔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협력 교육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복하지만 민주 발전 주제와 관련해서는 사업회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다른 전문 기구와 협력하거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IV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활용 사례

1.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구체화
방안 예시
2.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활용 사례

IV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활용 사례

1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구체화 방안 예시

본 연구에서는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토대로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법 및 관련 법령을 분석하였고 민주화 운동의 기념과 계승, 민주 발전의 지원을 교육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적용 영역, 준거 사건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내용 요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진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예시하기 위해 교육 목적을 구체화하는 교육 목표, 교수학습방법, 평가 방안 등에 대해 제2차 전문가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제2차 전문가협의회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진의 원고와 질문지를 이메일로 송부하고 회신을 받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이하에 정리된 결과는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또는 개발을 위한 전 단계로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주제 중심 교육과정이 교육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하의 서술은 교육과정 구체화의 한 사례로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운영, 적용 등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새롭게 구성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1) 교육 주제와 목표

교육 목적은 일반적으로 지식 영역, 기능 영역, 가치·태도 영역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교육 목적을 기념, 계승, 민주 발전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진은 제2차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하고 연구진의 의견을 종합하여, 기념, 계승, 민주 발전의 교육 목적에 따른 지식, 기능, 가치·태도 영역의 교육 목표를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교육과정의 구체화 형식만 예시할 것이며, 교육 프로그램의 예는 2절에서 제시할 것이다. 또한 작성의 편의를 위해 교육 주제는 준거 사건에 속하는 임의의 민주화 운동으로 가정한다.

〈표 5〉 교육 목적과 교육 요소를 통해 구체화 된 교육 목표

목적 요소	기념	계승	민주 발전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인권 침해 사례와 민주화 운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된 인권에 대해 이해한다. - 민주화 운동의 사례를 제시하고, 그 배경과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한다. - 민주화 운동 사례를 통해 시민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에서 지향하는 주요 가치와 민주 국가의 역할을 이해한다. - 일상적 맥락에서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 상황에 대해 비판적 분석 및 성찰 능력을 기른다. - 학교, 지역사회, 국가, 세계 등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실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과 정부, 국회, 법원, 헌법, 정치 과정, 정당 등 다양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이해한다. - 형식적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는 능력을 기른다. -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도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가치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화 운동을 통해 누리고 있는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한다. -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 민주화 운동의 사례를 통해 비민주적 실태에 대해 공감하고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 태도를 지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다양한 인종 및 민족과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한다.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혐오, 차별 배제에 저항하는 태도를 기른다.

(2) 교수 학습 방법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의 교수학습방법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전문성을 갖춘 강사의 강의식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지식과 민주주의의 원리와 제도, 민주 시민의 가치·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강의식 교육이 가능하다. 또한 강의 후 질의 응답, 모둠 토론 등 여러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소그룹 모둠 활동이 가능하다. 집단탐구(GI)나 직소모형(Jigsaw) 등 협동학습을 통해 강사가 강의하는 형태가 아니면서 학습자 스스로 조사하고 탐구하여 지식을 찾아가고 모둠 안에서 서로 가르쳐주도록 함으로써 교육 참여자가 주도적으로 학습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소그룹 모둠 활동을 통해 공감 및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능력 등 민주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셋째, 토의·토론 활동이 가능하다. 아이디어 개발 공론장, 논쟁 공론장, 경연형 공론장, 월드 카페 토의, pro-con 찬반 토론, 워크숍, 원탁회의 등 다양한 공론장 형태의 토의·토론이 가능하며, 정답이 정해져 있는 토론식 수업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다양한 생각을 논의하고 이에 따라 수렴되

는 결과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형태의 토의·토론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역할극, 교육 연극, 청소년 교육감 모의 선거, 학생 자치 법정, 비폭력 대화법 등의 활동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상호 공감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고, 사회 문제 및 갈등 상황을 민주적,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다섯째, 현장학습, 민주 올레 등의 현장 답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민주화 운동 현장 답사 및 기관 견학 등을 통해 민주화 운동이 실제 일어난 공간을 방문하여 운동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고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성찰할 수 있다. 이때 민주화 운동 관련 영화 감상 및 관련 도서 읽기, 모둠별로 소감 나누기 등을 사전, 사후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할 때 전문가 또는 실제 민주화 운동 참여자를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여섯째, 프로젝트학습, 사회참여체험학습, 지역사회 조사 방법 실습, 지역사회 문제해결 실습 등의 실제 문제해결학습이 가능하다. 교육 참여자가 스스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3) 평가

민주시민학교에서 진행된 교육에 대한 평가는, 교육 참여자의 자기 평가 및 프로그램 평가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자기 성찰 및 프로그램 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순히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지식·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 목표,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기능적 영역의 자기 평가 항목을 제시하여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장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며, 민주시민학교 운영자의 입장에서 이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습자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교육 결과 성장 정도를 확인하며 향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자기 평가의 경우, 주제별 교육 목표 및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항목들을 평가 질문으로 제시할 수 있다. 활동에 참여한 후 자기 성찰을 통해 어떤 점이 새로웠는지, 어떤 면에서 자신의 관점에 변화가 일어났는지, 앞으로 자기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등에 답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업에 앞서 학습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 파악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사후 설문을 통해 교육 효과를 좀 더 명확히 검토할 수도 있다.

또한 교육 활동의 준비 및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교육 참여자에게 교육 목표와 내용에 비추어 적절한 교육 활동이 제시되었는지, 활동의 준비가 적절했는지, 강사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평가하도록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와 내용, 교육 활동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할 수도 있다. 이는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서술식으로 제시될 수도 있으며, 그 결

과는 향후 민주시민학교의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 중요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조사 및 피드백은 활동 후 즉각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활동 직후에 교육 참여자의 성찰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필요에 따라 교육 참여자와의 개별 또는 그룹 면담을 통해 목표, 성취 정도, 어려움 등을 파악할 수도 있다.

2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활용 사례

(1) 기념

1) 민주화 운동과 청소년 참여

교육 목적	기념	교육 대상	청소년
교육 주제	민주화 운동과 청소년 참여	교육과정 관련 요소	- 적용영역: 시민의식(주권자 의식) - 준거사건: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교육 목표	1. 4·19혁명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이해한다. 2. 4·19혁명의 진행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 양상에 대해 분석한다. 3.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권자로서 시민 의식을 기른다.		
핵심 질문	- 4·19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 양상은 어떠했는가? - 4·19혁명 당시 청소년들이 시위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 당시 청소년과 시민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 4·19혁명은 지금 나의 사회적, 개인적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교육 활동	■ [활동1] 그뻐 그랬지! (1~2시간) 4·19혁명 관련 영상을 시청한다. (자료 검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관 오픈 아카이브: https://archives.kdemo.or.kr) -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영상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해 토의한다.		
	■ [활동2] 민주화 운동 전문가 (2시간) - 4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한다. - 모둠 구성원들이 각각 소주제(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 의거, 4·19혁명)를 하나씩 말한다. - 같은 소주제를 선택한 학습자들이 모여 소주제에 대해 조사한다. - 원래 모둠원들이 다시 모여 각자 공부한 소주제에 대해 가르쳐준다. - 교수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전체 학습을 정리한다.		

■ [활동3] 그날의 신문 만들기 (2~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 의거, 4·19혁명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한다. - 자기 모둠이 선택한 주제와 관련한 사진, 영상, 신문 기사, 공문서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 - 사설, 스트레이트 기사, 심층 취재, 사진, 인터뷰, 독자 투고, 만화, 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그날의 신문을 작성한다. - 종이 신문의 형태로 만들어도 되고, 인터넷 기사 또는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어도 좋다.
■ [활동4] 그날의 뉴스 (2~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 의거, 4·19혁명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한다. - 자기 모둠이 선택한 주제와 관련한 사진, 영상, 신문기사, 공문서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 - ‘그날의 뉴스’를 제작하기 위해, 뉴스 앵커, 기자, 시사평론가 등의 역할을 배정한다. - 뉴스 진행, 시사평론가의 토론, 기자의 시위 참여 학생 인터뷰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 모둠별로 ‘그날의 뉴스’를 발표한다. 모둠활동에서 미리 영상을 촬영하고 뉴스 형태로 편집한 후에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좋다. - ‘그날의 뉴스’에 대한 소감을 나눈다. - 소감문을 작성한다.
■ [활동5] 민주화 운동, 나도 참여자! (2~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 의거, 4·19혁명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한다. - 자기 모둠이 선택한 주제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의 진행 과정을 시나리오로 작성한다. - 모둠별로 배역을 정하고 역할극을 연습한다. - 역할극을 발표한다. - 역할극을 발표한 모둠과 관객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과 느낌을 나눈다. - 역할극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한다.
■ [활동6] 4.19 현장을 가다 (2~4시간)
<p>[탐방 예시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 4.19 민주 묘지에 대해 조사하고, 탐방 일정을 계획한다. - 유영봉안소와 묘지, 4·19혁명 기념관, 사월학생혁명기념탑, 상징문과 상징조형물 등을 탐방한다. - 탐방 후기를 작성하고 느낀 점을 토의한다. <p>[탐방 예시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화 운동 4월길 코스에 대해 조사하고, 탐방 일정을 계획한다. - 4월길 코스를 탐방한다. [청와대 영빈관 앞 → 4·19혁명 50주년 기념탑(광화문 시민열린마당) → 옛 국회의사당(서울시의회) → 옛 대법원 터(서울시립미술관) → 옛 이기붕집터(4·19혁명기념도서관)] - 탐방 후기를 작성하고 느낀 점에 대해 토의한다.

<p>교수학습 방법</p>	<p>[활동1] 영상 시청 수업 [활동2] 협동학습(직소수업) [활동3] NIE(신문활용수업) [활동4] 역할극: 그날의 뉴스 [활동5] 역할극: 민주화 운동 [활동6] 현장 학습</p>
<p>유의점 및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 의거, 4.19혁명 등 민주화운동을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할 뿐만 아니라 현재적 의미를 이해하고 특히 청소년의 입장에서 자신의 사회적, 개인적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공유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위에서 제시한 6개의 활동은 개별적,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활동1]을 중심으로 [활동2]~[활동6]을 종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활동1], [활동2], [활동3] 등을 각각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활동1]과 [활동2]를 연계하여 4~5차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또한 <민주화 운동과 청소년> 또는 <4.19혁명과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활동1]부터 [활동6]까지 매주 2~3시간씩 5~6주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이때 마지막 주는 [활동1]을 다시 진행하되 첫 주와는 다른 영상을 시청하고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소감을 나누는 방식으로 민주화운동(4.19혁명)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다. - [활동3], [활동4], [활동5]의 경우, 활동 참여 인원에 따라 하나의 민주화운동을 선택하여 함께 준비할 수도 있고, 2~3개의 사건을 선택하여 모둠별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이때 민주화 운동과 청소년 참여라는 주제를 고려하면, 2.28 대구민주화운동과 3.8 대전민주의거가 직접적으로 고등학생이 주도한 민주화 운동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주제에 적절하다. - [활동4]과 [활동5]의 경우, 역할극의 발표 형태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시나리오를 자세히 준비하여 완성도를 높이거나, 무대장치, 의상, 음향 등까지 역할을 나누어 진행할 경우, 또는 역할극을 직접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촬영하고 편집하여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활동을 3~5차차로 연장할 수 있다. - [활동6]의 경우, 위의 두 예시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있는 4.19 기념탑 및 현장 탐방이 가능하며, 온라인 탐방도 가능하다.
<p>평가 예시</p>	<p>■ 목표 및 내용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9혁명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 - 4.19혁명의 진행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 양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 4.19혁명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가? - 4.19혁명이 지금 나의 사회적, 개인적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4.19혁명 당시의 청소년과 지금의 청소년은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을까? 청소년의 삶이 과거와 다르게 변화한 이유는 무엇일까? - 활동 참가 후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주권자로서 시민 의식이 높아졌다고 생각되는가? <p>■ 과정 및 활동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프로그램의 교육 활동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 - 본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과 활동의 준비가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 - 본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의 전문성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p>■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와 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 - 본 프로그램의 교육 활동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

2) 6·10항쟁과 현행 헌법

교육 목적	기념	교육 대상	성인
교육 주제	6·10항쟁과 현행 헌법	교육과정 관련 요소	- 기본 원리: 국민주권, 법치주의 - 준거 사건: 6·10항쟁
교육 목표	1. 1987년 6·10항쟁과 제9차 헌법 개정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2. 6·10항쟁의 진행 과정에서 국민 주권의 실현에 대해 분석한다. 3. 6·10항쟁의 현재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시민의 사회 참여의식을 기른다.		
핵심 질문	- 6·10항쟁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 6·10항쟁 당시 시민의 참여가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 6·10항쟁의 현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교육 활동	■ [활동1] 영화 1987년 요약 영상 (53분) - 6·10항쟁을 다룬 영화 1987년(129분) 요약영상(53분)을 시청한다. (자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v9x2KPXfz6Q) -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영상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해 토의한다.		
	■ [활동2] 6·10항쟁의 의미 분석을 위한 모둠 활동 (2시간) - 4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한다. - 모둠 구성원들이 각각 소주제(6·10항쟁의 원인, 시민참여, 1987년 헌법 개정사, 1987년 헌법의 내용)를 하나씩 맡는다. - 같은 소주제를 선택한 학습자들이 모여 소주제에 대해 조사한다. - 원래 모둠원들이 다시 모여 각자 공부한 소주제에 대해 가르쳐준다. - 교수자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전체 학습을 정리한다. - 전체 학습을 정리하면서는 1980년 헌법과 1987년 헌법을 비교하여 1987년 헌법의 특징적인 내용, 예를 들어, 대통령 직선제가 왜 1987년 헌법에 담겼는지,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등 6·10항쟁을 기념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 [활동3] '6·10항쟁, 그 현재적 의미' 영상 제작 (2시간) - 모둠별로 6·10항쟁, 그 현재적 의미와 그것이 현재 우리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영상을 제작한다. - 6·10항쟁, 그 현재적 의미와 그것이 현재 우리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관한 사진, 영상, 신문 기사, 공문서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 -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작가, 프로듀서, 리포터, 촬영감독 등의 역할을 배정한다. - 영상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촬영, 편집한다. - 모둠별로 만든 영상을 발표하고 소감을 나눈다. - 소감문을 작성한다.		
교수학습 방법	[활동1] 영상 시청 수업 [활동2] 협동학습(직소수업) [활동3] 영상 제작		

<p>유의점 및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두환 정부의 국정 운영, 시민의 대통령 직선제 열망, 대통령의 호헌 선언, 6·10항쟁, 이른바 6·29 선언, 1987년 헌법 개정의 배경, 전개 과정, 현재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위에서 제시한 3개의 활동은 개별적,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활동1]을 중심으로 [활동2], [활동3]을 연속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활동1], [활동2], [활동3] 등을 각각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활동1]과 [활동2]를 연계하여 4~5차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 [활동1]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고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소감을 나누는 방식으로 6·10항쟁의 배경, 전개 과정, 현재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 [활동2], [활동3] 대신 민주화 운동 관련 탐방 지도 만들기를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하거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학습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p>평가 예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e0e0;">■ 목표 및 내용 평가</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0항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 - 헌법 전문은 헌법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가? - 헌법 전문의 기능에 비추어 6·10항쟁은 개정 헌법 전문에 표현할만한 사건인가? 그렇다고 판단한다면 왜 그런지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가? - 6·10항쟁의 진행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양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 6·10항쟁에 참여한 시민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가? - 6·10항쟁이 지금 나의 사회적, 개인적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활동 참가 후 시민의 사회 참여의식이 높아졌다고 생각되는가?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e0e0;">■ 과정 및 활동 평가</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프로그램의 교육 활동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 - 본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과 활동의 준비가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 - 본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의 전문성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e0e0;">■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와 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 - 본 프로그램의 교육 활동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 </td> </tr> </table>	■ 목표 및 내용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0항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 - 헌법 전문은 헌법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가? - 헌법 전문의 기능에 비추어 6·10항쟁은 개정 헌법 전문에 표현할만한 사건인가? 그렇다고 판단한다면 왜 그런지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가? - 6·10항쟁의 진행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양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 6·10항쟁에 참여한 시민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가? - 6·10항쟁이 지금 나의 사회적, 개인적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활동 참가 후 시민의 사회 참여의식이 높아졌다고 생각되는가? 	■ 과정 및 활동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프로그램의 교육 활동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 - 본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과 활동의 준비가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 - 본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의 전문성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와 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 - 본 프로그램의 교육 활동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
■ 목표 및 내용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0항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 - 헌법 전문은 헌법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가? - 헌법 전문의 기능에 비추어 6·10항쟁은 개정 헌법 전문에 표현할만한 사건인가? 그렇다고 판단한다면 왜 그런지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가? - 6·10항쟁의 진행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양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 6·10항쟁에 참여한 시민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가? - 6·10항쟁이 지금 나의 사회적, 개인적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활동 참가 후 시민의 사회 참여의식이 높아졌다고 생각되는가? 							
■ 과정 및 활동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프로그램의 교육 활동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 - 본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과 활동의 준비가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 - 본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의 전문성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와 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 - 본 프로그램의 교육 활동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 							

(2) 계승

1) 공정한 선거 관리

교육 목적	계승	교육 대상	청소년
교육 주제	공정한 선거 관리	교육과정 관련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원리: 법치주의 - 적용영역: 선거/투표 - 준거사건: 3.15 의거, 4.19혁명
교육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정한 선거 관리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한다. 2. 선거운동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합법적 선거운동과 불법 선거운동을 구분한다. 		

	<p>3. 투표·개표 절차를 이해하고, 국내외 다양한 투표제도에 대해 조사한다. 4. 최근 선거 부정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p>
<p>핵심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선거 관리가 왜 필요할까? - 합법적 선거운동과 불법 선거운동 사례에는 각각 어떤 것들이 있을까? - 투표와 개표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해결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p>교육 활동</p>	<div style="background-color: #f2f2f2;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활동1] 선거 운동, 참 다양하다 (1~2시간)</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선거운동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학급회장 및 학생회장 선거 경험 중 인상에 남는 선거운동이나 유세 사례, 대선, 총선, 지선 중 선거운동 경험 등) - 이색 선거운동 관련 영상을 시청한다. [Jtbc뉴스] 선거운동, 어디까지 해봤니? https://youtu.be/d_zrqzKUwEg - 다양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 토의한다. <div style="background-color: #f2f2f2;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활동2] 3.15 부정 선거를 파헤친다 (1~2시간)</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5 부정선거 관련 영상을 시청한다. [KBS 역사저널 그날] 그날 비화, 1960년 3.15 부정선거 https://youtu.be/nmSHQneSE-Q - 3.15 선거 당시에 이루어진 다양한 부정선거 방법에 대해 조사한다. -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이유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div style="background-color: #f2f2f2;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활동3] 합법적 선거운동, 어떻게 해야 할까? (1~2시간)</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주요 선거 유형에 대해 이해한다. - 합법적 선거운동과 불법 선거운동 사례에 대해 조사한다. - 선거운동에 대한 퀴즈를 실시한다. 카훗, 멘티미터, 소크라티브 등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다. - [참고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2020).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청소년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2020). 만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공직선거법 제7장 - 공정한 선거운동의 의의에 대해 토의한다. <div style="background-color: #f2f2f2;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활동4] 투표·개표 절차, 어떻게 이루어질까? (2시간)</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개표 절차에 관한 영상을 시청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절차] 선거와 민주주의 7회 https://youtu.be/N7F5Q2EFwbE [개표절차] 선거와 민주주의 8회 https://youtu.be/FqhkDEOMYRI - 투표·개표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그 역할에 대해 조사한다. - 투표·개표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토의한다. <div style="background-color: #f2f2f2;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활동5] 투표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1~2시간)</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대 투표율 변화 조사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참조) - 해외에서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에 대해 조사하기 - 의무투표제에 대한 찬반 토론하기(투표할 의무 vs 참여하지 않을 자유) - 민주주의와 투표율의 관계를 이해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하기

	<p>■ [활동6] 공정한 선거 제도 만들기 (2~4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하는 사회에서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해 조사한다. - 후보자 토론회와 효과성,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한국 선거 광고의 역사, 참정권 연령 하향, 지방 자치와 주민 참여 등 다양한 선거 관련 주제를 제시한다. - 모둠별로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공정한 선거를 위해 어떤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 토의한다. - 전체적으로 발표하고 모둠별 토의 결과를 공유한다.
<p>교수학습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1] 미디어 활용 교육 - [활동2] 미디어 활용 교육 - [활동3] 온라인 도구 활용 교육 - [활동4] 미디어 활용 교육 - [활동5] 찬반 토론 수업 - [활동6] 협동학습(집단 탐구 모형)
<p>유의점 및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5 부정선거 등 과거에 이루어진 불법 선거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공정한 선거 관리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선거운동, 투표·개표 절차, 다양한 투표제도 등 민주적 선거제도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위에서 제시한 6개의 활동은 개별적,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활동1] 또는 [활동2]를 중심으로 [활동3]~[활동6]을 종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 선거 관련 다양한 자료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의 영상자료 및 학습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활동6]의 경우, 오늘날 민주적 선거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을 모둠별 소주제 학습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고, 개별 주제를 하나의 수업으로 구성하여 밀도있게 진행할 수도 있다. - 위의 활동 이외에도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선거 참여 연령 하향(공직선거법 개정), 유권자와 참정권 등의 활동을 추가할 수 있으며, 최근 이슈와 관련하여,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선거 보안의 문제, 소셜 미디어의 사용 확산이 선거운동에 미친 영향,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명암, 디지털 시대의 선거 정보의 투명성 강화 방안(예를 들어 선거 캠페인의 자금 흐름) 등의 내용도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다.
<p>평가 예시</p>	<p>■ 목표 및 내용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선거 관리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 합법적 선거운동과 불법 선거운동을 구분할 수 있는가? - 투표·개표 절차를 설명할 수 있는가? - 민주적 선거제도와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가? -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 활동 참가 후 법치주의 및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는가? <p>■ 과정 및 활동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프로그램의 교육 활동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 - 본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과 활동의 준비가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 - 본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의 전문성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
- 본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와 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 - 본 프로그램의 교육 활동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

2) 6·10항쟁과 우리의 과제

교육 목적	계승	교육 대상	성인
교육 주제	6·10항쟁과 우리의 과제	교육과정 관련 요소	- 기본 원리: 국민주권, 입헌주의 - 준거 사건: 6·10항쟁 - 지방자치제, 언론/미디어
교육 목표	1. 1987년 6·10항쟁 당시 참여한 시민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한다. 2. 6·10항쟁 당시 참여한 시민의 정치 민주화에 대한 요구 중 달성된 것과 달성되지 못한 것을 판단할 수 있다. 3. 6·10항쟁 당시 참여한 시민의 정치 민주화에 대한 요구 중 달성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 4. 1987년 체제를 수립할 때 시민의 열망 중 실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 헌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탐색하여 헌법 개정안을 만들 수 있다.		
핵심 질문	- 1987년 6·10항쟁 당시 참여한 시민의 주장은 무엇이었는가? - 현재 관점에서 항쟁 당시 시민의 정치 민주화에 대한 요구 중 달성된 것은 무엇인가? - 현재 관점에서 항쟁 당시 시민의 정치 민주화에 대한 요구 중 달성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세 번째 핵심 질문에서 도출한 실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 헌법은 어떻게 개정해야 하나?		
교육 활동	■ [활동1] 6·10항쟁 30주년 기념 영상 시청(1시간)		
	- 6·10항쟁을 다룬 항쟁 30주년 기념 영상(5분)을 시청한다. (자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N5RVpLhNX1k) - 6·10항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 현재적 의미에 대해 토의한다.		
교육 활동	■ [활동2] 6·10항쟁의 계승을 위한 모둠 활동 (2시간)		
	- 3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한다. - 모둠 구성원들이 각각 소주제(6·10항쟁에 참여한 시민이 주장한 것, 1987년 헌법에 반영된 내용, 당시 정치 민주화 주장 중 현재 관점에서 달성된 것과 달성되지 못한 것)를 하나씩 맡는다. - 같은 소주제를 선택한 학습자들이 모여 소주제에 대해 조사한다. - 원래 모둠원들이 다시 모여 각자 공부한 소주제에 대해 가르쳐준다. - 당시 정치 민주화 요구 중 현재 관점에서 달성되지 못한 것(예를 들어, 지방자치제, 언론/미디어 개혁)을 찾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한다. - 위에서 토의한 모둠의 생각을 발표하고 다른 모둠의 생각과 비교한다. - 6·10항쟁을 계승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찾고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한다.		

	<p>■ [활동3] 모의 헌법 개정안 작성 (2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헌법의 기능과 현행 제9차 개정 헌법의 내용을 정리한다. - 1980년 헌법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것과 1987년 헌법 내용을 비교하며 왜 이와 같은 차이점이 생겼는지 검토한다. - 1987년 체제를 수립할 때 시민의 열망 중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한 것을 찾은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실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 헌법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하는지 탐색한다. - 위 탐색에 기반하여 모둠별로 제10차 헌법 개정안을 작성한다. - 각 모둠별로 제10차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른 모둠의 생각과 비교한다. <p>※ 김종철, 헌법전문과 6월항쟁의 헌법적 의미 — 민주공화국 원리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2018, pp.211-234.</p>
<p>교수학습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1] 영상 시청 수업 - [활동2] 협동학습(직소수업) - [활동3] 모의 헌법 개정안 작성
<p>유의점 및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0항쟁을 계승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찾고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위에서 제시한 3개의 활동은 개별적,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활동1]을 중심으로 [활동2], [활동3]을 연속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활동1], [활동2], [활동3] 등을 각각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활동1]과 [활동2]를 연계하여 4~5차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 [활동1]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고 영상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소감을 나누는 방식으로 6·10항쟁의 배경, 전개 과정, 현재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 [활동3]은 이른바 입법 학습을 간소화한 것이다. 따라서 [활동3]을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경우, 입법 학습의 일반 이론을 강의한 후 그에 따라 현행 헌법을 개정한다고 가정할 후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 것을 해볼 수 있다. 만약 헌법 개별 조항의 개정안을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개정 헌법 전문(前文) 개정안을 작성해 보는 것으로 축소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p>평가 예시</p>	<p>■ 목표 및 내용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0항쟁에 참여한 시민의 주장은 무엇이었는가? - 당시 주장 중 현재 관점에서 달성되지 못한 것을 찾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 현재 관점에서 항쟁 당시 시민의 요구 중 달성된 것은 무엇인가? - 현재 관점에서 항쟁 당시 시민의 요구 중 달성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현재 우리의 실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 헌법은 어떻게 개정해야 하나? <p>■ 과정 및 활동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프로그램의 교육 활동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 - 본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과 활동의 준비가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 - 본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의 전문성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
- 본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와 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 - 본 프로그램의 교육 활동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

(3) 민주 발전

1) 학생 자치

교육 목적	민주 발전	교육 대상	청소년
교육 주제	학생 자치	교육과정 관련 요소	- 기본 원리: 자율/연대 - 적용영역: 시민 역량(참여 역량, 의사결정 역량)
교육 목표	1. 학생 자치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한다. 2. 학급회, 학생회 등 학생 자치 활동을 조직하고 규칙을 만든다. 3. 학생 자치를 통해 학급, 학교, 지역사회 등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4. 학생 자치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 구성원,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자치를 실천한다.		
핵심 질문	- 학생 자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 학생 자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 학생 자치를 통해 학교 및 학급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학생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연대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		
교육 활동	■ [활동1] 학생 자치, 왜 필요할까 (1~2시간) - 초·중·고등학교에서 경험한 학생 자치의 긍정적, 부정적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 학생 자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발표한다. -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생인권조례, 학교 규칙 등을 참고하여 학생 자치에 대한 규정을 조사한다. - 모둠별로 학생 자치 활동 우수 사례에 대해 조사한다. 이는 시·도교육청별 학생자치활동 우수 사례자료집 또는 관련 영상을 참고할 수 있다. - 가장 인상적인 사례, 우리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등에 대해 발표한다. - 학생 자치의 의미와 필요성,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교육 활동	■ [활동2] 학급회·학생회 조직하고 규칙 정하기 (1~2시간) - 학급회·학생회의 조직과 운영, 임원의 역할 등에 대해 토의하고 기록한다. - 학급회·학생회의 회의 절차, 활동 규칙 등에 대해 토의하고 결정한다. - 이때 학급회·학생회의 활동 규칙에 대해 결정할 때는, 피라미드 토의를 통해 1인 5개씩 규칙을 제안하고 1:1, 2:2, 4:4, 8:8, 16:16 등의 토의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학급회·학생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규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p>■ [활동3] 학생 자치규약 및 자치법정 만들기 (1~2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학교의 학교 규칙에 대해 조사한다. - 모둠별로 꼭 지켜야 할 학교 규칙 1가지를 선택하고, 해당 학교 규칙을 지키기 위한 학생 자치 규약에 대해 토의한다. - 모둠별 학생 자치규약을 발표하고, 전체 토의를 통해 학생 자치규약을 결정한다. - 자치규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의 처벌 규정에 대해 토의한다. - 모의자치법정을 구성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 토의하고 실천한다. • 법무부 이로운법(법사랑사이버랜드) 학생자치법교육 자료실 참조 https://www.lawnorder.go.kr/portal/cluser/lawcourt/bbsview.do?page=1&board_num=23561&pwd=&pw=null&st=&sw= <p>■ [활동4] 학교 의사결정구조에서 학생의 참여는 어디까지? (1~2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속한 학교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조사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학생의 참여 범위에 대해 검토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및 생활협동조합에 학생 참여 및 심의의결권 부여, 학생 참여 예산제 등에 대해 토의한다. - 학생자치회의 결정 사항을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학교에 전달하고 협의한다. <p>■ [활동5] 교육공동체와 연대하기 (2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자치회와 연대하여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관련 공동체에 대해 조사한다. - 모둠별로 교사회, 교직원회, 교원노조, 학부모회,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교육부,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생활협동조합, 지역사회 캠페인(ex. 교복 입은 시민) 등 중 하나를 맡아 각 교육공동체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에 대해 조사한다. - 모둠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 학생자치회와의 연대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p>교수학습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1] 모둠 활동 - [활동2] 피라미드 토의 - [활동3] 모둠별 토의 학습 - [활동4] 모둠별 토의 학습 - [활동5] 협동학습(집단 탐구 모형)
<p>유의점 및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일상의 공간인 학급과 학교에서 자치를 경험하고 학교 및 학교 밖 교육공동체와 연대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다양한 문제들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위에서 제시한 5개의 활동은 개별적,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활동1] 을 중심으로 [활동3]~[활동5]를 종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 학생 자치 관련 활동은 시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관련 자료 및 법무부 이로운법(법사랑사이버랜드)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 [활동3]은 학교 규칙의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학생 생활규약을 정하고 자치법정을 운영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활동4]와 [활동5]는 학생들의 학교 규칙 제정 및 개정 권한에 대한 논의와 학교 밖 연대까지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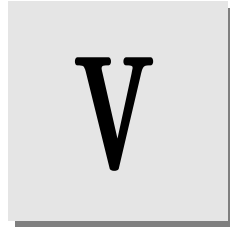
	<p>각 활동에 대해 학급자치 및 학생자치(학생회) 수준에 맞춰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며, 초·중·고등 학교 급별 수준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p> <p>학생 자치와 관련하여, 참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학생회 임원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학교 운영에 있어 어느 수준까지 참여 가능하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시될 수 있다. 이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의 민주적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그리고 교사 및 관리자, 학교 측과의 민주적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 즉 다수결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자유와 평등,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가 등의 실질적 가치 지향에 대해 부단히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p>
<p>평가 예시</p>	<p>■ 목표 및 내용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자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 학급회·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을 조직하고 규칙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가? - 학생 자치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민주적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 학생 자치를 통해 학급, 학교, 지역사회 등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 학생 자치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 구성원,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자치를 실천할 수 있는가? - 활동 참가 후 자율 및 연대의 가치에 관심이 증대되었는가? - 활동 참가 후 참여 및 의사결정 역량이 증대되었는가? <p>■ 과정 및 활동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프로그램의 교육 활동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 - 본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과 활동의 준비가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 - 본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의 전문성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p>■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와 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 - 본 프로그램의 교육 활동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

2) 6·10 항쟁과 한국·외국 민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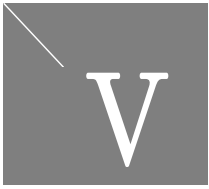
<p>교육 목적</p>	<p>민주발전</p>	<p>교육 대상</p>	<p>성인</p>
<p>교육 주제</p>	<p>6·10항쟁과 한국·외국 민주화</p>	<p>교육과정 관련 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원리: 참정권, 자유권 - 준거 사건: 6·10항쟁
<p>교육 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987년 6·10항쟁 당시 참여한 시민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한다. 2. 6·10항쟁 당시 참여한 시민의 정치 민주화에 대한 요구 중 달성된 것과 달성되지 못한 것을 판단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탐색한다. 3. 세계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외국의 정치 민주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탐색한다. 4. 참정권과 선거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비추어 현행 우리 참정권과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실천한다. 		

	<p>5. 세계시민으로서 외국의 정치 민주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천한다.</p>
<p>핵심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년 6·10항쟁에 참여한 시민의 주장과 그것 중 달성된 것, 달성되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 6·10항쟁에 참여한 시민의 정치 민주화에 대한 요구 중 달성되지 못한 것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 미래와 세계를 위해 어떤 의미가 있는가? - 참정권과 선거란 무엇이고, 현행 우리 참정권과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p>교육 활동</p>	<p>■ [활동1] 6·10항쟁 30주년 기념 영상 시청(1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0항쟁을 다룬 항쟁 30주년 기념 영상(5분)을 시청한다. (자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N5RVpLhNX1k) - 6·10항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 현재적 의미, 그 당시 시민의 문제의식이 미래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토의한다. - 위 토의를 바탕으로 6·10항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 현재적 의미, 그 당시 시민의 문제의식이 미래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각자 정리한다. <p>■ [활동2]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탐색을 위한 모둠 활동 (2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한다. - 모둠 구성원들이 각각 소주제(6·10항쟁의 의미, 참정권의 의미와 기능, 선거제도의 의미와 기능, 현행 참정권과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하나씩 맡는다. - 같은 소주제를 선택한 학습자들이 모여 소주제에 대해 조사한다. - 원래 모둠원들이 다시 모여 각자 공부한 소주제에 대해 가르쳐준다. - 교수자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전체 학습을 정리한다. - 전체 학습을 정리하면서는 6·10항쟁 당시 시민이 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라는 주장을 핵심 주장으로 하였는지 탐색하고, 참정권과 선거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현재 상황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예를 들어, 선거는 후보자 중 가장 좋은 후보자를 대표자로 선출하는 것이 가장 상위의 목표이므로 자유로운 선거와 공정한 선거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현행 선거제도는 공정한 선거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탐색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 확대, 선거운동 주체 확대, 모의선거 교육 허용 등 개선 방안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을 탐색한다. <p>■ [활동3] ‘아랍 민주화, 미완의 과제’ 영상 제작 (2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6·10항쟁과 그 의미에 비추어 아랍 민주화가 우리와 그들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는 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영상을 제작한다. - 6·10항쟁과 그 의미에 비추어 아랍 민주화가 우리와 그들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는 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진, 영상, 신문기사, 공문서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 -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작가, 프로듀서, 리포터, 촬영감독 등의 역할을 배정한다. - 영상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촬영, 편집한다. - 모둠별로 만든 영상을 발표하고 소감을 나눈다. - 소감문을 작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학습을 정리하면서는 세계시민으로서 외국의 정치 민주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p>교수학습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1] 영상 시청 수업 - [활동2] 협동학습(직소수업) - [활동3] 영상 제작
<p>유의점 및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0항쟁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정신을 통해 우리나라와 국제적인 과제를 찾아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위에서 제시한 3개의 활동은 개별적,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활동1]을 중심으로 [활동2], [활동3]을 연속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활동1], [활동2], [활동3] 등을 각각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활동1]과 [활동2]를 연계하여 5차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 [활동1]을 통해서는 영상을 시청하고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소감을 나누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6·10항쟁에 참여한 시민의 정치 민주화에 대한 요구 중 미완의 과제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 미래와 세계를 위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탐색하도록 안내한다. - [활동1]을 통해서는 민주주의에서 참정권과 선거가 가지는 의미(선거가 정해진 선거 절차에 따라 대표자를 결정하는 행위로 대의제에서 시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며,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정치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한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활동2], [활동3] 대신 민주화 운동 관련 댓글 속 왜곡·혐오 표현 찾기를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p>평가 예시</p>	<p>■ 목표 및 내용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0항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참정권과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가? - 6·10항쟁이 나와 우리 공동체의 미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6·10항쟁이 지구 저편에 사는 다른 사람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세계시민의식이란 무엇인가? - 활동 참가 후 세계시민의식이 높아졌다고 생각되는가? <p>■ 과정 및 활동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프로그램의 교육 활동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 - 본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과 활동의 준비가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 - 본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의 전문성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p>■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와 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 - 본 프로그램의 교육 활동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



결론



결론

우리는 독재를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공산주의로 해독할 것을 강요받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현행 헌법의 개정과 더불어 형식적 민주 국가의 면모를 갖추었지만 이러한 아픔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상대를 독재자나 공산주의자로 낙인찍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직도 적지 않으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타인을 주권을 지닌 평등한 시민이 아닌 도구나 차별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한다. 사업회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더 이상 억압과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제도적 상징이다.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업회 활동이 위축되기도 했지만, 그 어떤 정권도 사업회 활동을 완전히 중단시킬 수는 없었다. 나아가 첨예화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은 국내외적으로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그만큼 사업회의 역할이 더욱 중시될 것은 자명하지만, 이와 더불어 사업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 비판 의식도 함께 증대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회가 편향적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된 문제 제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 실효성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담당 기관으로서 사업회의 위상이 문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배경적 인식하에 우선 민주시민학교로 대표되는 사업회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 관련 법령과 헌법에 근거하여 민주화 운동의 기념과 계승, 민주 발전 지원이라는 민주시민교육의 목적과 인권, 민주주의, 시민성으로 대별되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요소를 특정하였다. 이 중에서 기념과 계승은 과거 시점에 한정하여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현재와의 연관하에서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요소를 배열하였고, 풍부한 예시를 통해 기획과 운영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교육 프로그램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교육과정 수준에서 이러한 연결 과정을 낱낱이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또, 교육과정이 너무 상세하게 제시된다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의 자율성이 감소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으로서 아쉬운 부분은 민주시민학교 교육과정 제안의 초점을 체계와 근거에 맞추는 바람에 민주 발전과 관련해서 충분한 논의를 전개하지 못한 점이다. 예시를 위해 세계인권선언, 인간환경선언, 문화다양성선언 등을 활용했지만 현대에 들어 사회적 갈등의 양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민

주주의, 또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새롭게 검토해야 할 문제도 점점 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불평등, 또는 차별만을 주제로 한정하더라도 현대 사회에 만연하는 차별은 '차별'이라는 동일한 술어로 규정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우리는 사람들이 타인을 성, 또는 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힘이 세거나 약하다는 이유로, 가난하거나 부자라는 이유로, 학식이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외국인이거나 내국인이라는 이유로, 심지어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 등으로 갖가지 구실을 붙여 차별하는 현실을 목도한다. 사업회의 설립과 더불어 우리는 독재나 민주주의를 차별의 술어로 사용하지는 않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합의하지 못한 차별적 술어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보고서의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념 및 계승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지만 민주시민학교, 나아가 사업회가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민주 발전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갈까 하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최종적 제언이다.

참 고 문 헌

〈도서, 논문, 연구보고서〉

- 김철수(2009). 헌법학신문. 박영사.
- 김선택(2017).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적 합의. 헌법연구, 4(1), 19-46.
- 김혜경, 윤희정, 진성희(2019).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13(3), 147-177.
- 박순용 외(2023). 민주화운동기념관 기반 민주시민교육 증장기계획 수립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보고서.
- 설규주, 정원규(2020).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원칙 연구. 시민교육연구, 52(2), 229-260.
- 소경희(2017). 교육과정의 이해, 교육과학사.
- 유석렬(1986).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한국정치교육의 방향. 한국정치학회보, 20(2), 191-205.
- 정문성, 강대현, 설규주, 전영은(2018).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 정원규, 설규주, 오재길 외 (2019).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개념 및 추진원칙 연구.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 정종섭(2012). 헌법학원론. 박영사.
- 정필운(2022). 전환기의 교육헌법. 박영사.
- 최호근(2011). 부담스러운 과거사 교육의 효용과 전략. 역사교육, 120, 129-161.
- 표시열(2008). 교육법: 이론·정책·판례. 박영사.
- Carr, E. H. (1961). *What is history*. London: Macmillan & Co. Ltd.
- Crick, B. (1998). *Crick's Report: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the teaching of democracy in school*. England: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역)(2008). 크릭보고서: 학교 시민교육과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Heater, D. (2003). *A history of education for citizenship*. New York: RoutledgeFalmer. 김해성(역)(2007). 시민교육의 역사. 경기도 파주: 한울아카데미.
- Rousseau, Jean-Jacques. (2014). *The major Political Writings of Jean-Jacques Rousseau* (translated and edited by John T. Scot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법령〉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5. 18.] [법률 제13289호, 2015. 5.]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2028&ancYnChk=0#0000>)(검색일: 2023.8.2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22&ancYnChk=0#0000>) (검색일: 2023.8.2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9254#0000>) (검색일: 2023.8.22.)

〈판례〉

헌법재판소 1991. 7. 22. 89헌가106, 판례집 3, 387, 407-408

헌법재판소 1996. 4. 25. 94헌마119, 판례집 8-1, 433, 447

헌법재판소 2001. 11. 29. 2000헌마278, 판례집 13-2, 762, 773

헌법재판소 2002. 3. 28. 2000헌마283

헌법재판소 2009. 9. 24. 2007헌마117

〈웹사이트〉

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 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69ad9e6f8fb34f8daf77dfbfdbafb437>) (검색일: 2023. 8. 1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실, 이야기 형식으로 기억을 들려주는 워싱턴 홀로코스트 기념관 (<https://www.kdemo.or.kr/d-letter/all/page/74/post/103>) (검색일: 2023. 12. 15.).

UN, 세계인권선언 (<https://www.ohchr.org/en/human-rights/universal-declaration/translations/korean-hankuko>) (검색일: 2023. 12. 11.).

UN, 인간환경선언 (<http://www.davincimap.co.kr/davBase/Source/davSource.jsp?Job=Body&SourID=SOUR001154>) (검색일: 2023. 12. 11.).

UNESCO, 문화다양성선언 (https://unesco.kor.cafe24.com/assets/data/standard/3lw0SeSGpBv99y0PDA4PUBQjuVeMAG_1216566000_1.pdf) (검색일: 2023.12.13.).

제주 4·3 평화 재단, (<https://jeju43peace.or.kr/>) (검색일: 2023. 11. 14.).

5·18 기념 재단, (<https://518.org/nsub.php?PID=0301>) (검색일: 2023. 11. 1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관 오픈아카이브 (<https://archives.kdemo.or.kr/>).

영화 1987 요약 영상,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v9x2KPXfz6Q>) (검색일: 2023. 11. 14.).

3. 12. 16.).

Jtbc뉴스(2018. 5. 30.) 선거운동, 어디까지 해봤니?. 유튜브(https://youtu.be/d_zrqzKUwEg) (검색일: 2023. 12. 16.).

KBS 역사저널 그날, 그날 비화, 1960년 3.15 부정선거, 유튜브(<https://youtu.be/nmSHQneSE-Q>) (검색일: 2023. 12. 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10항쟁 30주년 기념 영상,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N5RVpLhNX1k>) (검색일: 2023. 12. 16.).

법무부, 이로운법(법사랑사이버랜드) 학생자치법교육 자료실 (https://www.lawncourt.go.kr/portal/cluser/lawcourt/bbsview.do?page=1&board_num=23561&pwd=&pw=null&st=&sw=) (검색일: 2023. 12. 16.).

